

時事資料·第56號

統一教育

統一研修院



南北關係動向

- 『'93 팀스피리트訓練』 관련 南北對話 拒否 5

北韓動向

■ 對內動向

- 金正日 生日 動向 13
- 『6.25』休戰 40周年 맞아 蹶起大會 開催 16
- 『社會主義 憲法』採擇 20돌 紀念大會 開催 19
- 山林建設事業의 劃期的 轉換 促求 25

■ 對南動向

- 『南北基本合意書』採擇 1周年 맞아 對南非難 31
- 『汎民聯』北側의 動向 34

■ 對外動向

- 韓半島 統一위한 美·日등의 協力 促求 41

資 料

- '93 金日成 新年辭 分析 47
- 北韓의 黨·政 改編 動向 76
- 北韓 經濟建設 現況 및 經濟煽動 實態 83
- 北韓의 對外經協 및 外資誘致 關聯法 發表 92
- 北韓의 山林法 125
- 北韓의 貿易商社와 輸出入品 現況 134

■ 北韓日誌

■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動靜

- 統一教育專門委員 新規委囑 및 解囑委員 名單 149

■ 참고자료

- 國際關係의 轉換期的 葛藤과 統一環境 ... 崔文鉉 ... 153

南北關係動向

- 『'93팀스피리트訓練』 관련 南北對話拒否

南北關係動向

『'93 팀스피리트訓練』 관련 南北對話 拒否

概 要

- 北韓은 우리측의 『'93 팀스피리트訓練』 實施 發表(1.26)와 관련, 1.27 外交部 聲明 및 各種 政黨·社會團體 談話, 報道媒體 등을 통해 일제히 “強盜的 行爲”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1.29에는 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 名義의 聲明을 발표, “모든 對話를 再開할 意思가 없다”고 밝혔음.

◀ 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 聲明 要旨 ▶

- 팀스피리트 '93 合同軍事演習 計劃이 公布됨으로써 오늘 北南關係는 또다시 對話없는 對決의 原點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朝鮮半島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核戰爭의 위험천만한 情勢가 조성되게 되었음.
- 北南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은 끝끝내 美國과 함께 팀스피리트 '93 合同軍事演習을 強行하는 길로 들어선 南朝鮮 當局者들의 犯罪的 策動을 온민족과 함께 準렬히 斷罪·糾彈함.
- 南朝鮮 當局者들이 核問題를 구실로 팀스피리트 合同 軍事演習을 再開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加害者

가 도리어 被害者에게 죄를 묻는 것과 같은 強盜的인 主張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

- 지난 時期 팀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 期間에 進行된 板門店會談들은 예외없이 南朝鮮 當局者들의 戰爭演習 騷動을 中止시키기 위한 會談이었고 외세에 야합하여 北侵戰爭演習을 벌이는 南朝鮮 當局者들을 斷罪하고 審判하기 위한 對話였음.
- 南朝鮮이 팀스피리트 '93 合同軍事演習을 強行하는 것은 南朝鮮에 있는 美國의 核武器와 核基地에 대한 全面查察을 回避하고 美軍撤去를 막으며 저들의 核武器 開發策動을 隱蔽해 보려는데 있음.
- 南朝鮮 當局者들이 外勢와 야합하여 計劃的으로 對話를 破綻으로 몰아가고 있는 條件에서는 구태여 그들에게 對話를 求乞할 생각이 없으며 凍結狀態에 빠진 모든 北南 當局사이의 對話를 굳이 再開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闡明함.

分 析

- 北韓은 매년 『T/S 訓練』計劃 發表 직후
 - 同 訓練을 “北侵을 위한 核戰爭 演習”이라고 歪曲하면서 韓半島의 緊張責任을 韓·美側에 轉嫁시키는 한편
 - 對內的으로는 『戰鬥動員準備態勢命令』 下達 등을 통해 緊張雰圍氣造成 및 內部結束 강화에 이용해 왔으며

- 南北對話面에서는 우리측을 “反對話·反統一集團”으로 매도하면서 對話中斷의 구실로 삼아 왔음.
- 今年의 경우에도
 - 韓·美 兩側의 지난해 10.8 第24次 年例安保協議會에서 “南北核協商에 진전이 없을 경우, 『93 T/S 訓練』實施를 준비한다”고 발표한 이후
 - 分野別 共同委 會議(’92.11), 第9次 高位級會談(’92.12) 등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킨 채
 - 持續적으로 우리측을 “反民族的 犯罪集團”이라고 非難하면서 同 訓練 計劃을 撤回하라고 요구해 왔음.
- 우리側은 『93 T/S 訓練』과 관련
 - 그동안 北韓과의 22차례(’92.3-’93.1)에 걸친 『南北核統制共同委』會議 등을 통해
 - 조속히 『査察規程』이 마련되어 『相互査察』이 실시될 경우 同 訓練 實施與否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일관된 立場을 北側에 喚起시켜 왔음.
- 그러나 北韓은
 - 國際原子力機構의 査察(’92.5-’93.1, 6回)로 그들의 “核政策의 潔白性”이 立證되었다고 強辯하는 한편
 - “南側의 核不在宣言”을 믿을 수 없으니 駐韓美軍基地에 대한 全面 同時査察을 실시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 『相互査察』實施는 차치하고 『査察規程』採擇마저도 遲延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번 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의 對話 拒否 聲明은
 - 『T/S 訓練』과 南北對話는 兩立될 수 없다는 그들의 既存

8 統一教育

論理를 正當化하는 한편

- 南北間의 核問題가 우리측의 無誠意로 해결되지 못함으로 써 모든 對話가 중단되게 되었다고 強辯, 對話 中斷의 責任을 우리측에 轉嫁시키는데 汲汲하고 있음.
- 특히 과거 『T/S 訓練』 期間中에 南北對話가 進行되었던 事例와 관련, 이것은 同 訓練을 규탄하기 위한 “對話의 場”이었다고 歪曲한 것은 北韓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南北對話를 中斷시키거나 進行해 왔다는 點을 立證해 주는 것임.

※ 『T/S 訓練』 期間中 南北對話 進行 事例

- 1980.3-4 : 南北總理會談 準備 實務代表 接觸 4回
 - 1984.4 : LA 올림픽 南北單一팀 構成・參加 위한 體育會談 1回
 - 1989.2-3 : 第1,2次 南北 高位當局者 豫備會談
 - 1989.3 : 北京아시안게임 南北單一팀 構成・參加 위한 體育會談 2回
 - 1991.1-2 : 第41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 및 第6次 世界 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單一팀 構成・參加 위한 體育會談 5回 등
- 한편 『外交部 聲明』 가운데 주목되는 點은
 - “『核擴散防止條約』(NPT)上的 義務를 다할 수 없게 한다”는 主張인 바
 - 이는 核問題와 관련된 國際的 壓力에 맞대응하면서 『T/S 訓練』에 대한 內外의 批判輿論을 造成하려는 목적으로 보임.(북한동향 제109호)

北 韓 動 向

對內動向

- 金正日 生日 動向
- 『6.25』休戰 40周年 맞이 蹶起大會 開催
- 『社會主義 憲法』採擇 20돌 紀念大會 開催
 - 山林建設事業의 劃期的 轉換 促求

對內動向

金正日 生日 動向

概 要

- 北韓은 金正日 51回 生日(2.16)을 맞아 各種 紀念行事를 大
大的으로 開催하였는 바
 - － 對內的으로는 『2.16 藝術賞 個人競演』(2.1)을 시작으로
思想·藝術·體育分野에 걸쳐 20여개 行事를 進行하였으
며
 - － 對外的으로는 親北團體를 動員, 紀念集會, 圖書·寫眞展
示會, 映畫鑑賞會 등을 開催하고 『金正日文獻』을 出版·
配布하였음.
 - 특히 慶祝雰圍氣 高潮를 위해 平壤에만 216萬송이(金正日
生日 2.16象徵)의 꽃을 피웠고 『金正日花』에 이어 『孝誠花』
도 처음으로 普及하였으며 또한 매일 2만여명의 住民들을
動員, 金正日 “革命史蹟地”를 參觀시켰음.
- ※ 『孝誠花』는 金正日生日인 『2月名節』과 같이 추운날에도
開花시킬 수 있는 꽃으로, 元山農業大學이 10여년간 研究
하여 栽培에 成功한 櫻草科의 꽃으로서 金正日이 命名

分 析

- 金正日生日 行事는
 - '74.2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75년에 休務日로 지정되었으며
 - '80.10 第6次 黨大會에서 黨 常務委員으로 選出된 다음부터 行事規模가 크게 擴大되었고
 - 40回 生日('82年)을 期해 2月 한달이 『2月の 名節』로 指定(中央人民委 政令)되는 한편
 - 昨年부터 『民族 最大의 名節』로 불리우면서 金日成生日에 버금가는 行事로까지 擴大되어 오고 있음.
 - 이번 行事는 例年보다 規模가 비교적 크고 多樣한 行事(15→20여개)로 進行되었는 바, 이는 金正日 位相 強化를 위해 곧 이어 開催되는 北韓 最大의 社會團體인 『社勞靑』 第8次大會(2.18-22)와 連繫시키고 있기 때문임.
 - 또한 言論媒體를 통해 金正日 中心의 一心團結을 促求하면서 各 分野에 있어 金正日의 “賢明한 領導”와 金日成에 대한 “忠孝”를 重點 強調함으로써 金正日이 完全無缺한 領導者임을 誇示하였음.
 - 로동신문 紀念社說(2.16) : “수령의 『위대성』에 굳은 신념을 갖고 김정일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할 것”을 促求
- ※ 이 경우 “首領”은 黨中央으로서의 金正日을 지칭하고

있는데, 北韓은 韓德수가 朝總聯 中央報告大會에서 “두분의 위대한 首領”이라고 言及한 것을 '92.5.10 中央放送을 통해 引用 報道한 以後 各種 論文, 報告를 통해 金正日을 지칭하여 자주 “首領”이라는 用語를 쓰고 있음.

- 中放 連續企劃物 “문무충효를 겸비한 위대한 영도자”(2.14) : 金正日是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숭고한 충효를 지니시고 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모든 심혈과 노고를 다바치시는 충성의 귀감”임.
- 中放 正論(2.18) : 南韓 水災民 救護物資 전달, 南北基本 合意書, 非核化共同宣言 採擇 등을 金正日 領導의 結果라고 主張하면서 金正日을 “祖國統一의 위대한 嚮導星”으로 稱頌
- 특히 例年(5個 代表團)에 비해 많은 海外 親北政黨 代表(15個)들을 生日 祝賀使節로 대거 招請하였는 바, 이는 金正日이 海外에서도 絶對的인 支持와 尊敬을 받고 있는 것으로 住民들에게 宣傳하려는 意圖로 보임.
- 요컨대 이번 生日行事는 金正日이 領導者로서의 資質과 함께 忠孝心이 지극한 指導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金正日 位相 強化와 아울러 住民들에게 『우리式 社會主義』의 기치인 首領·黨·人民大衆의 一心團結로 金正日의 두리에 굳게 뭉칠 것을 促求한 行事였음. (북한동향 제112호)

『6·25』休戰 40周年 맞이 蹶起大會 開催

概 要

- 北韓은 今年들어 1.4의 “平壤市 大會”를 필두로 각지에서 道單位, 郡單位 및 工場·企業所別로 “『祖國解放戰爭(6·25) 勝利』 40돌 맞이 群衆集會”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당시의 “勝戰精神”으로 金父子와 社會主義를 지켜 나아가자고 決議하고 있음.

◀ 決議要旨 ▶

- 祖國解放戰爭은 우리 人民의 歷史上 처음으로 世界 帝國主義의 우두머리인 美帝國主義를 打勝하고 자기 祖國과 革命의 戰取物을 수호한 世界史的 意義를 가지는 위대한 革命戰爭이었음.
- 오늘 우리나라는 政治, 經濟, 軍事, 文化의 모든 면에서 社會主義와 帝國主義의 첨예한 對決場으로 되고 있음. 帝國主義者들은 계속 힘의 政策에 매달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社會主義 나라들을 瓦解시켜 보려고 온갖 악랄하고 교활한 策動을 다하고 있음.
- 오늘의 造成된 情勢와 社會主義 建設에서 나서는 이 어렵고 방대한 課業들은 우리의 全體 黨員들과 勤勞者들로 하여금 준엄한 戰火의 나날에 발휘한 그 鬪爭精

神과 氣魄을 가지고 계속 힘차게 鬪爭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모든 黨員들과 勤勞者들은 全黨, 全民, 全軍이 一心團結해서 社會主義 偉業을 끝까지 完成하자는 口號를 높이 추켜들고 黨과 首領의 두리에 굳게 뭉쳐 不屈의 鬪爭精神을 발휘해서 英雄的으로 鬪爭함으로써 社會主義 建設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나라 社會主義 制度의 優越性을 더욱 높이 發揚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分 析

- 이 蹶起大會는
 - 金日成 新年辭 貫徹 群衆集會와 並行, 또는 單一行事로 進行되고 있는 바
 -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今年이 『祖國解放戰爭 勝利』(’53.7.27 休戰協定) 40周年임을 강조하고 당시의 鬪爭精神으로 社會主義를 옹호·고수하고자 言及한 데서 비롯된 것임.
- 이와 같이 『6·25』를 내세워 群衆集會를 全地域에 걸쳐 開催하고 있는 것은
 - 이른바 “6·25 勝戰 意識”을 鼓吹시켜 體制維持에 이용하려는 住民精神 武裝教育의 일환이며
 - 持續的으로 軍을 浮刻시킴으로써 體制維持에 있어서의 軍의 역할을 強調하려는 意圖 등으로 分析됨.

18 統一教育

※ 그들 스스로가 北韓이 “社會主義와 帝國主義의 첨예한 對決場이 되고 있다”고 指摘한 點은 심각한 危機意識의 發露로 注目되는 言動임.

※ 北韓은 今年 7.27 竣工을 目標로 지난해 5.30 平壤市 市場公園에 대규모의 『祖國解放戰爭 勝利 記念塔』을 착공한 바 있으며 1.11字 『平放』은 이날 현재 동 記念塔의 大門骨組 組立工事が 완료되었다고 報道하였음.

(북한동향 제107호)

『社會主義 憲法』採擇 20돌 記念大會 開催

概 要

- 北韓은 『社會主義 憲法』採擇 20周年(12.27)을 맞아 12月 26日 黨·政 幹部 등이 참가한 가운데 記念集會를 갖고 “모든 分野에서 憲法을 철저히 具現함으로써 社會主義의 完全 勝利와 祖國統一을 앞당기자”고 促求하면서 北韓 憲法에는 “開放하는 것을 비롯하여 國際關係 發展에 나서는 모든 內容들이 包含되어 있다”고 強調하였음.

◀ 李鍾玉 記念報告 要旨 ▶

- 社會主義 憲法이 制定 實施된 이후 지난 20年間 社會主義 建設에서 이룩된 빛나는 勝利와 成果에 기초하여 革命 發展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憲法을 發展의 修正 補充하여 우리式 社會主義의 法的 擔保를 공고히 하는 劃期的 措置를 취하였음.
- 人民大衆이 思想的으로 병들면 社會主義는 망하게 되며 資本主義 社會에 대한 社會主義 社會의 優越性은 바로 思想의 優越性이며 革命과 建設이 前進하는데 맞게 思想革命을 끊임없이 深化 發展시켜 나아가야 함.
- 온사회의 인테리化를 빨리 실현하여야 하며 社會主義의 文化生活을 원만히 보장하고 社會主義 文化를 발전

시켜 썩어빠진 부르조아 文化가 우리 內部에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지금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은 우리國家 社會制度에 대하여 악랄하게 誹謗하면서 우리가 마치 開放하지 않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이것은 現實을 심히 歪曲한 變遷에 지나지 않음.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하여서도 문을 닫아 맨 적이 없으며 앞으로 없으리라.
- 일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開放問題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우리를 政治·經濟·外交的으로 封鎖하고 계속 壓力을 가하여 우리의 社會主義 偉業을 抹殺하려는 데 그 불순한 目的이 있으나 우리에게 社會主義 制度를 견결히 옹호 고수할 수 있는 위력한 法的 武器가 있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는 黨과 國家의 領導가 있는 한 두려울 것이 없음.
- 法務生活을 강화하여야 社會가 組織化되고 社會生活이 다양화 해지는데 맞게 革命的 法秩序를 튼튼히 세워 나아갈 수 있고, 밖으로부터 부르조아思想, 修正主義思想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온사회에 革命的 遵法氣風을 철저히 세워 모든 公民들이 國家의 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을 신성한 義務로 여기고 나라의 法秩序와 法規範들을 自覺的으로 성실히 履行하도록 해야 함.
- 人民大衆이 自主偉業, 社會主義 偉業을 固守 完成해 나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社會主義 憲法의 요구대

로 首領의 領導, 黨의 領導를 忠誠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것임.

- 人民政權機關들은 革命과 建設을 방해하고 社會主義 制度를 破壞하려고 하는 帝國主義者들과 階級的 원수들의 策動을 제때에 짓부셔 버려야 하며 우리 內部的 反社會主義的 要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
- 社會主義 法務生活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이에 대한 黨의指導를 심화시켜야 하며 우리 國家의 法은 곧 우리黨 政策을 貫徹하기 위한 것임.
- 모든 일군들과 勤勞者들은 黨과 首領의 현명한 領導가 있고 우월한 國家 社會主義 制度가 있는 한 우리의 偉業은 반드시 百戰百勝한다는 信念을 가지고 우리 制度와 法을 固守하기 위해 鬪爭해야 함.

分 析

- 北韓은 憲法節 20돌 紀念演說을 통해
 -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은 “革命과 建設에서 이룩한 成果들을 法的으로 고착시키고 社會主義制度의 優越性を 반영한 『政治憲章』이며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의 主要 課業들을 規制한 『百科全書的인 叢書』라”고 評價하고
 - “勤勞人民大衆을 중심에 놓고 그들에게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生活을 보장하기 위한 諸原則을 體系化하였으며 憲法構成體系도 創造的으로 開拓한 主體憲法이라”고 美化

하였음.

○ 이어서 “社會主義 憲法이 구현됨으로써 온 社會에 革命的 制度와 질서가 잘 세워졌으며 思想·技術·文化의 3大 革命이 힘있게 추진되고 政治秩序와 自主原則이 견지되고, 經濟가 自立的으로 發展되고 있으며 自衛的 國防力이 다져졌다”고 自讚하면서

— 人民이 온갖 物質的 生活條件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食·衣·住에 대한 權利, 배우며 治療받을 權利에 이르기까지 모든 權利가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共和國 뿐”이라고 糊塗하였음.

○ 특히 “다른 나라에서 社會主義가 挫折된 情勢속에서도 主體의 한 길을 따라 곳곳이 前進하는 北韓의 社會主義는 세계의 進步的인 人民들로부터 찬탄을 받고 있으며 世界 社會主義 偉業의 밝은 前途에 대한 信心을 주고 특히 南朝鮮 靑年學生들이 희망의 燈臺로 바라보면서 투쟁하고 있다”고 歪曲·煽動하고

—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策動으로 지금 社會主義가 시련을 받고 있지만 社會主義로 나아가는 것은 歷史發展의 法則이라”고 必勝의 信念을 강요한 가운데 “資本主義 思想과 修正主義 事大主義 思想을 반대하여 鬪爭하고 부르조아文化가 스며들지 않도록 排擊하여야 한다”고 力說하였음.

- 한편 社會主義 憲法에는 “開放하는 것을 비롯하여 國際關係 發展에 나서는 모든 內容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開放』 問題를 舉論하였는 바, 이는 昨今の 情勢變化와 國際經濟協力の 必要性 등을 意識하여 對外的으로는 關係增進을 追求하고 對內的으로는 開放과 관련한 衝擊이나 思想動搖에 對備하려는 言動으로 分析됨.

※ 國際關係와 開放問題에 관련된 憲法 規定

- 外國人の 合法的인 權益 保障(16條)
 - 外交理念으로 自主, 平和, 親善 追求(17條)
 - 對外關係는 平等, 自主, 互相 尊重, 內政不干涉, 互惠 등의 原則을 堅持(17條 2項)
 - 自主性を 옹호하는 人民들과의 團結 및 自主權과 民族的 階級的 解放 實現 鬭爭의 支持 聲援(17條 3項)
 - 外國 法人, 個人들과의 合營·合作 獎勵(37條)
 - 互惠 平等의 原則에서 對外貿易 發展(36條) 및 關稅政策 실시(28條) 등
- 총체적으로 볼 때 憲法節 20돌 紀念集會도 최근 일층 強化 되고 있는 思想講習의 일환으로서
- 煽動의 骨子は 憲法의 요구대로 人民政策을 強化하고, 法務生活을 강화하여 革命的 法秩序를 세우며, 『政治生命體』의 뇌수인 『首領의 領導』를 忠誠으로 받들며 北韓式 社會主義를 固守해 나아갈 것을 促求하고 있는 點이며

24 統一教育

- 작년말 『朝鮮知識人大會』(12.9-12.12), 『全國法務일군大會』(12.17-12.19), 『全國人民政權機關 일군決議모임』(12.21)에 연이은 內部團束 次元의 行事였다고 評價됨.

(북한동향 제105호)

山林建設事業의 劃期的 轉換 促求

概 要

- 中央放送은 12.13 最高人民會議 第9期 4次會議時(12.11) 채택한 山林法을 철저히 관철하여 山林造成과 保護管理에 서의 劃期的인 轉換을 추구하였음.

◀ 報 道 要 旨 ▶

- 山林의 적극적인 造成, 철저한 保護·管理, 효과적인 이용은 나라의 自然賦源을 늘이고 經濟를 發展시키며 人民生活을 높이는데 중요한 意義를 가진.
- 山林造成과 保護事業에 광범한 群衆을 組織·動員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이 널리 취해짐으로써 山林建設을 위한 모든 事業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山林 資源을 늘이기 위한 鬭爭이 全國的·全社會的 範圍에서 활발히 벌어졌음.
- 새로 採擇된 山林法은 山林經營에 대한 國家의 統一의 指導를 강화하며, 이 部門의 物質 技術的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國家的인 保障對策과 監督·統制機關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 各級 政權機關, 國土管理機關, 林業機關들은 山林法의 內容을 널리 解說·浸透시켜 모든 일꾼·勤勞者들이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이의 執行을 위한 監督·統制事業을 강화함으로써 山林建設事業에 劃期的 전환을 가져와야 함.

分 析

- 북한은 第3次 7個年計劃('87-'93) 기간중 150萬 町步의 造林事業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낙엽송, 잣나무 등 經濟林 造成과 山林資源의 保護·管理에 學生·勞動者들을 비롯한 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많은 政策的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식수절(4.6)과는 별도로 매년 봄·가을철에 한달간씩 植樹期間을 설정, 造林事業을 추진하고 있음.
- ※ 山林面積은 北韓 全體 面積의 80% 수준인 約 980萬 町步로서 年間 木材生産量은 3百萬 m³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이번 第9期 4次 最高人民會議에서는 山林造成과 保護, 山林資源의 利用 및 山林經營의 指導·統制強化를 내용으로 하는 全文 5章47條로 구성된 山林法을 새로이 採擇하는 등 山林造成·管理에 관한 制度的 조치를 강화하였음.
-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規則』 또는 『政令』 등을 통해 山林造成과 保護·管理事業을 추진해 왔음.
- 이와 같이 북한이 山林保護育成事業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 食糧增産을 위한 『다락밭』 造成, 燃料不足에 따른 火木

(떨감나무) 需要增加 등에 따른 山林毀損을 防止해 보려
는데 目的이 있음. (북한동향 제103호)

對南動向

- 『南北基本合意書』採擇 1周年 맞아 對南非難
 - 『汎民聯』北側의 動向

對南動向

『南北基本合意書』採擇 1周年 맞아 對南非難

概 要

- 北韓은 『南北基本合意書』 채택('91.12.13) 1周年을 맞아 『中
通』 報道(12.13), 『平放』 解說(12.13), 汎民聯 北側本部 談
話(12.13), 로동신문 論評(12.15) 등을 통해 “南側의 反對
話·反平和·反統一的 行爲로 인하여 北南基本合意書가 履
行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側을 非難하였음.

◀ 非 難 要 旨 ▶

- 北南合意書가 채택되어 1年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履
行의 앞길에 難關이 造成되고 있는 것은 南側의 反對
話·反平和·反統一的 行爲에 起因됨.
- 南側이 北南合意書의 基本정신인 祖國統一 3大 原則을
부정하면서 T/S 訓練 再開를 획책해 나섬으로써 北南
對話가 麻痺狀態에 빠지게 되었음.
- 統一을 民族志向의 課業으로 내세우고 있는 南朝鮮 人
民들은 反統一 分子들의 策동을 결코 容納하지 않을
것임.
- 汎民聯 北側本部는 北南合意書가 철저히 履行되어 統

一의 轉換의 局面이 열려지도록 계속 鬭爭을 벌여나갈 것임.

- 美國은 核武器를 비롯한 모든 殺人武器들을 건어 가지고 南朝鮮에서 당장 물러가야 함.
- 汎靑學聯의 南側 및 海外本部와 全體 靑年學生들은 分裂主義勢力들의 妨害策動을 짓부수고 合意書의 履行을 위한 鬭爭에 떨쳐 나서야 함.

分 析

- 北韓은 『南北基本合意書』가 採擇된 以後
 - 對內的으로는 모든 宣傳媒體를 동원, 同 合意書의 採擇이 “金日成과 金正日의 현명한 領導의 結實”, “우리의 일관한 統一政策의 빛나는 勝利” 등으로 宣傳하는 한편
 - 對南面에서는 和解協力時代가 시작된 만큼 駐韓美軍 撤收, 國家保安法 廢止, 訪北拘束者 釋放, 콘크리트障壁 撤去, 李仁模 送還 등을 實現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南北基本合意書)

- 採擇 : '91.12.13(서울,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
- 發效 : '92.2.19(平壤,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

- 『南北基本合意書』採擇 1周年과 관련된 北韓態度的 특징은
 - 우리側의 “反對話·反平和·反統一의 行爲”때문에 『南北

基本合意書』가 履行되지 않고 있다고 그 責任을 轉嫁하면서

— 우리 社會의 各界各層에게 反政府·反美鬭爭을 중심으로 『統一鬭爭』을 적극 전개하라고 煽動하고 있는 點 등임.

○ 최근의 南北關係는

— 北韓이 『'93 팀스피리트』 訓練 再開問題를 구실로 今年 11月初부터 열리게 되어 있는 分野別 『南北共同委員會』의 稼動을 拒否함으로써 進展이 없는 狀態인 바

— 北韓이 우리側에 모든 責任을 轉嫁시키고 있는 것은 마치 南北對話에 誠意가 있는 것처럼 內外輿論을 糊塗할려는 目的임. (북한동향 제103호)

『汎民聯』北側의 動向

概 要

- 北韓은 1.26 『汎民聯』北側本部 中央委員會 總會를 열고, 『汎民聯』南側本部 結成 支援·第4次 汎民族大會 개최· 『民族統一政治 協商會議』召集 등을 올해의 課業으로 채택 하는 한편, 尹基福 議長 後任으로 白仁俊 副議長을 選出하는 등 任員選舉를 실시하였음.

◀ 內 容 要 旨 ▶

會議 內容

- 日時 및 場所：1.26, 人民文化宮殿
- 議 案：① “汎民聯北側本部中央委員會 事業總和와 1993年度 課業에 대하여”
② “汎民聯北側本部委員會 選舉에 대하여”
- 報 告 者：白仁俊 副議長
- 會 議 結 果：• “汎民聯 海內外 組織들과 同胞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채택
• 議長 交替(尹基福→白仁俊)

報告 및 『呼訴文』要旨

<報告('93年度 課業)>

- 美軍과 核武器를 철거시키기 위한 運動을 힘있게 전개
 - 당면하여 『'93 T/S 訓練』 中斷 鬭爭 전개
 - 國家保安法 撤廢, 訪北人士 및 長期囚 釋放을 위한 鬭爭 強化
 - 『汎民聯』 組織 強化와 南韓 및 海外組織과의 연계 強化
 - 『汎民聯』 南側本部 結成 및 合法化 實現 위해 努力
- <『呼訴文』>
- 『汎民聯』 南側本部를 結成하고 그 活動의 合法化를 쟁취할 것
 - 第4次 汎民族大會('93)를 北과 南, 海外 代表가 한자리에 모인 성대한 統一祝祭로 장식할 것
 -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를 열어 聯邦制 方式의 統一方案을 民族共同의 統一方案으로 확정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

分 析

- 『汎民聯』 北側本部는
 - '90.11.20 『汎民聯』 結成(베를린) 당시 확정된 '91年度 事業計劃에 따라 '91.1.25 勞動黨 對南擔當祕書 겸 『祖平統』 副議長이던 尹基福을 議長으로 하여 이른바 『汎民聯』의 北側 支部로 結成된 團體로서
 - ※ '90.12.27 『汎民聯』 海外本部 結成

'91. 1.23 『汎民聯』 南側本部 準備委員會 結成

- 이후 『汎民聯』 활동을 主導, 매년 汎民族大會 및 關聯行事를 개최하여 왔으며
- 우리 사회의 在野 및 運動圈을 대상으로 한 反政府·反美鬭爭 宣傳활동의 求心體로 機能해 왔음.
- 北韓이 『汎民聯』 會議를 통해 美軍撤收·國家保安法 撤廢 등을 올해의 鬭爭課業으로 提示하고, 南側本部 結成과 第4次 汎民族大會 推進 등을 決議한 것은
 - '93年度 『汎民聯』의 稼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今年에도 여전히 南側本部 結成準備委 및 海外側을 동원, 『汎民族大會』 등 일련의 對南宣傳·煽動活動을 組織적으로 展開하려는 의도로 보임.
- ※ 우리 大法院은 '92.7.28 “『汎民聯』 南側本部 結成準備委員會”를 不法團體로 규정한 바 있음.
- 한편 北韓은 이번 會議에서 尹基福을 議長職에서 그만두게 하였는 바, 이는 최근 報道되고 있는 그의 黨內 役割 變更說(對南擔當→教育擔當)과 관련하여 주목됨.

參 考

北韓은 이번 會議와 때를 같이해 『汎民聯』의 青年前衛團體인 이른바 『汎靑學聯』 議長團 決議大會를 베를린에서 開催했다고 報道(1.27, 中放)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日時·場所 : 1993.1.16-18, 베를린

- 參 席 者：
 - 朝鮮學生委 代表 4名
 - 南側 代表 2名(성용승, 박성희)
 - 其他 海外側 代表 12名
- 採 擇 文 件：
 - 『汎青學聯』議長團 決議大會 共同決議文
 - 『'93 T/S 訓練』糾彈 特別聲明書
 - 國家保安法 撤廢 要求 抗議文

◀ 共同決議文 要旨 ▶

- 美軍撤收, 韓半島 非核平和地帶化를 위해 鬭爭할 것
- ‘全民族的 統一政治協商會議’의 소집을 위해 鬭爭할 것
- 國家保安法 撤廢, 文益煥牧師 釋放, 李仁模 送還과 『汎青學聯』組織 擴大를 위해 鬭爭할 것

※ 祖國統一汎民族青年學生聯合(『汎青學聯』)은 '92.8.15 第3次 汎民族大會(板門店)中 結成 (북한동향 제109호)

對外動向

- 韓半島 統一위한 美·日등의 協力 促求

對外動向

韓半島 統一 위한 美·日 등의 協力 促求

概 要

- 北韓의 朴成哲 副主席은 1.3 金日成新年辭 支持談話에서 韓半島의 分斷은 北韓에 대한 軍事·經濟的 壓力으로 해결될 수 없는 冷戰의 所産이라고 강조하고 統一을 위해 美·日 등 有關國들이 協力해야 한다고 主張하였음.

◀ 談話要旨 ▶

- 首領은 올해 新年辭에서 朝鮮의 統一問題는 우리民族이 主體가 되어 해결하여야 할 民族的 問題인 동시에 有關國들도 責任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國際的 問題라는 점을 밝혔음.
- 朝鮮의 分裂은 우리 民族의 意思에 따른 것이 아니라 外勢에 의하여 강요된 冷戰時代의 產物인 것 만큼 有關國들이 責任을 지고 그것을 끝장내는데 協力해야 함.
- 우리에 대하여 軍事·經濟的으로 威脅하고 壓力을 加하는 것은 冷戰時代의 후과를 가시려는 태도가 아니며 時代의 흐름에 逆行하고 朝鮮民族의 意思를 거역하는

행위임.

-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時代的 要求와 國際的 正義의 原則에서 朝鮮問題를 우리民族 자신의 힘으로 解決하도록 誠意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곧 자기의 責任과 義務를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 우리와 그 나라들 사이의 關係를 改善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임.

分 析

- 北韓은 今年들어 統一問題와 관련
 - 金日成 新年辭에서 “朝鮮問題가 冷戰의 產物”이자 “國際問題”인 만큼 有關國들의 協力이 필요하다고 強調하였고
 - 이번 朴成哲의 談話를 통해서도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美·日 등 有關國들의 協力を 促求하고 나섰음.
 - 北韓이 이와 같이 年初부터
 - 分斷問題의 “民族自主의 原則에 입각한 解決”을 強調하면서, 동시에 “有關國들의 協力”을 浮刻시키고 있는 것은
 - 그들의 이른바 “自主性”을 誇示하면서 새해를 맞아 지난해 不振했던 對美·日 關係改善 交渉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불러는 意圖임.
- ※ 金日成은 新年辭에서 “누구와도 統一問題를 허심탄회하게 協議할 것”이라고 言及하였으나 1.3 平放 論說 (“祖國統一의 進로를 헤쳐 나아가기 위한 綱領的 指

針”)에서 “北·南·海外의 모든 民族은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제시한 統一構想에 同參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北韓이 宣傳하는 “民族自主原則에 입각한 統一協商”은 곧 “高麗聯邦制 統一協商”을 意味하는 것임을 보여 주었음. (북한동향 제106호)

資

料

- '93 金日成 新年辭 分析
- 北韓의 黨·政 改編 動向
- 北韓 經濟建設 現況 및 經濟煽動 實態
- 北韓의 對外經協 및 外資誘致 關聯法 發表
 - 北韓의 山林法
- 北韓의 貿易商社와 輸出入品 現況

'93 金日成 新년사 분석

1. 對內政治

金日成의 新년사에서 밝힌 바와같이 금년도 北韓사회주의가 추구해 나가는 기본과제는 작년에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 위업을 발양시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해 新년사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더욱 빛내어 가는 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 있는 영예로운 과업이다』라고 외부로부터의 北韓사회주의에 대한 각종 도전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금년도의 기본적인 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新년사에서 계속하여 모든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다』고 하면서 北韓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로 규정을 하고 그에 대한 이른바 특성과 본질적 우월성을 다음 몇가지로 지적했다.

즉 그 특성과 우월성이란 모든 주민의 정치적 권리가 법적·사회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인민의 존엄을 침해하며 유린하는 사회악이 없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라는 것, 정부가 주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함으로써 의·식·주 생활

에서 근심 걱정을 모른다는 것, 모든 사람이 소질과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고 한사람의 실업자와 결식자가 없다는 것,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된다는 것,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주민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탁을 같이해 나가는 사회라는 것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과 이른바 우월성을 가지는 北韓사회는 사회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오늘의 행복도 내일의 희망도 없을 뿐더러 사회주의는 곧 北韓주민의 생활이며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 재확인

이러한 사회주의 고수의 주장으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원칙과 노선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역사의 실현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방법론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여부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모든 간부들이 청산리 정

신,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 일으켜 당의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어가야겠다』는 이른바 이데올로기 중심의 인간개조를 선행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金日成의 금년도 신년사에서 對內부문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방향은 北韓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그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기존의 사회주의 건설의 원리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기초위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금년도의 대내정치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큰 변화없이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3차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3대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라는 것을 규제했는데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본노선으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 노선이 금년도도 변함없이 견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사회주의우월성 선전에 주력할 듯

사상·기술·문화혁명이라는 3대혁명은 사상혁명에 주력하면서 기술·문화혁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데올로기 중심의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舊 蘇聯·東歐나라들은 물론 中國사회주의에 있어서도 종래의 사상혁명을 중요시하던 정책은 이미 포기했으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이데올로기 우선주의를 포기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이에 반해 오늘날 北韓에서는 기술혁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인간개조라는 사상혁명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舊蘇聯·東歐 및 中國에서는 종래의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거기에 걸맞게 권력구조는 물론 정책과 노선상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추세에 반해 北韓에서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여 그의 우월성 선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년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우월성 선전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北韓사회주의에서 가장 취약점의 하나가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제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金正日의 지도력과 이미지 선전의 지속적 전개예상

그리하여 이번 신년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의·식·주 문제해결이 北韓정권의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낮은 생활수준으로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선전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오며 北韓주민들은 그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北韓으로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 선전을 강조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韓國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점들을 크게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권력구조상의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金正日에 대한 지도력 과시와 권력의 집중 및 이미지 부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한 것은 91년 5월 5일 金正日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題下의 「담화」에서였다고 볼 수가 있으며 그것을 지난해 4월에 개최된 바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법적으로 고착화했다. 따라서 이미 새롭게 구축된 金日成·金正日 중심의 권력구조에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오늘날 北韓의 金正日是 당·국가·군대의 首位에 위치하면서 실질적인 수령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그 이전에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군의 실질적인 통수권 행사를 하게 되었고 對內外 및 통일정책에 이르기까지 金正日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또한 그가 중요한 지도이론들을 수시로 제시함으로써 탁월한 사상이론가로, 또한 걸출한 지도자라는 이미지 부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7차 黨대회 개최 難望

한편 北韓의 권력구조는 당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구성되게 마련인데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개최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 지도부에 대한 선출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바 있는 당 전원회의에서 7차 당대회 개최문제가 취급되지 않았으며 金日成 신년사에서도 당대회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년에는 7차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당의 지도부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구성은 없을 것이며 다만 종래와 같이 부분적인 인물변동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제8차 대회 및 기타 정치행사를 예상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0일에 개최된 바 있는 社勞靑중양위원회 제7기 21차전원회의에서 금년 2월에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제8차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제8차 대회는 81년 10월 제7차 대회가 개최된 후 12년 4개월만에 열리게 되는 것인데 이 대회에서는 청년들의 주체사상

에 의한 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열성을 발휘토록 하는 결의들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정치행사로서는 2월의 金正日 생일(51주년)과 4월의 金日成 생일(81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어질 것이며 7월에는 휴전협정체결 40주년과 관련 대대적인 反美의식고취 및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선전활동들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추진함에 있어 당행정의 지도간부들의 사업방법을 한층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구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관해 이미 신년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에서 사상사업을 선행시키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개선하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조직동원한다』는 원칙하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같은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며 「속도전」 형식의 노동생산성 배가운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경제선동을 위한 정치사업이 강화된다는 것이며 지난해 말 지식인대회에서 결의한 바와같이 北韓사회를 혁명적 분위기로 조성하여 전투적으로 주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토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처럼 금년도 北韓 對內정치 전망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확립해온 金日成·金正日 중심의 권력구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2. 對外政策

金日成은 93년 신년사를 통해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을 관철해 나갈 것』과 『사회주의 나라들과 불력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등 대외정책 전개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천명하였다.

이보다 앞선 金日成은 통일문제와 관련해 『조국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유관 국가들도 책임을 느끼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국제적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주변 4강들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탈냉전적 정책과 이에 기초한 대북관계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상과 같은 대외관계 관련 언급은 지금까지 北韓이 천명해 왔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어떠한 특별한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금년도 신년사가 전체적 흐름에서 지난해에 비해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와해책동과 제국주의적 세계지배 실현 추구에 대한 비판강도가 낮아진 것이 눈에 띈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조의 변화 역시 그들이 말하는 제국주의자들의 反사회주의 책동에 대한 경계 완화나 제국주의자들과의 무분별한 타협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년도 北韓의 대외정책은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 및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등에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적극 차단하면서 사회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계속 공고히 하는 한편 세계

적 및 한반도 주변의 탈냉전 추세에 편승, 美·日·西歐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그리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같은 기본전제 하에 금년도 北韓이 전개할 대외정책 방향과 당면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적 관심 현안으로 美·日과의 관계개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美·日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 과제

최대의 외교적 현안이 되어온 對日수교 교섭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핵심의제의 하나인 「核」문제를 둘러싼 쌍방간의 첨예한 견해차가 결정적인 장애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비록 7차 회담 이후 약 반년만에 재개된 지난해 11월 5~6일의 8차 본 회담의 결렬이 실무회담에서 日本측이 거론한 「李恩惠 문제」에 의한 北韓의 반발 때문이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이미 수교회담의 어두운 전망은 7차회담의 결과로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작년 5월초의 7차회담 이후 6월에 들어와 日·北韓간 우호분위기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7월에 열기로 합의했었던 8차회담이 장기 중단된 이면에는 7차회담에서 日本측이 北韓 核문제의 처리에 관한 전제조건을 강화한 데에 대한 北韓의 반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즉 日本은 핵문제의 韓國과 美國이 주장해 온 「남북상호사찰」에 대한 北韓측의 수락 등을 수교전제조건

으로 삼는 태도경색을 보였고, 그 결과 北韓 역시 이에 맞서 남북상호사찰을 전제 조건화 한다면 양국 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빠질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 종래의 「先수교 後현안 타결」 방식을 철회, 국교수립에 매달리기 보다는 경제문제 등에 정면 대응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한 北韓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는 바, 8차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예컨대 92년 7월 9일 「회담을 결렬시킨 용납 못할 행위」題下의 중앙방송 시사논단프로에서 日本측이 「核문제」와 「李恩惠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北韓과 『국교정상화 문제를 계속 논의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회담결렬의 책임에서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 日本의 태도를 비난하며 『쌍방 관계개선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북의 존엄과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관계개선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對日수교 회담 難望

뿐만 아니라 92년 8월 1일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종군위안부·태평양전쟁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동위원회를 통해 종군위안부 등 과거 日帝만행과 관련한 토론회·좌담회·고발장 등을 연이어 개최 또는 발표해 왔다. 또한 10월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는 阿洲지역 좌경 정당·단체 인물들을 동원하여 개최한 「한반도 非핵지대화 지지 국제회의」에서 「舊日本의 전시죄행에 관한 국제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12월 8~16일까지

동위원회 대표 5명을 평양으로 초청, 조사활동의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유엔 산하 인권기구·국제단체들이 日本으로 하여금 사죄·보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식민지 피해보상 문제를 고리로 삼아 對日압력을 강화해 왔다.

北韓이 日本의 플루토늄 대량반입을 핵무장 책동으로 규정, 對日비난을 강도높게 전개해 오고 있는 것 역시 北韓의 자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과 같은 北韓측의 일련의 움직임은 日本이 南北동시 핵사찰을 수교전제 조건으로 삼는 한 어차피 수교회담의 진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교의 조기성사에 연연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 피해사죄·보상문제를 고리로 맞대응하는 편이 자신들의 이른바 「자주성」의 부각효과를 거둘 수 있고, 日本정부로 하여금 對北태도를 완화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은 앞으로의 수교회담에서 90년 9월의 3당 합의문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강경자세를 취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日本 역시 對北수교의 전제조건 특히 남북핵의 「상호사찰」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작년 11월 8일의 韓·日정상회담에서 한반도정세 및 北韓의 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라는 기본원칙과 아울러 남북상호동시사찰에 대한 日本측의 지지입장이 재확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실상 시간은 자기 편이라는 판단 속에 수교원칙을 완화하면서까지 北韓과의 관계정상화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 日本의 일관된 자세로 되어 있다.

◆ 對美관계 개선 「核」·「인권」문제가 걸림돌

이와같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한 北韓측의 대내외적인 조기수교성사 필요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회담의 진척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對美관계 역시 그 장래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北韓은 특히 지난해 부터 對美비난·비방 논조를 크게 완화하고 6·25동란때 실종된 미군의 유해송환 및 이의 추적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美國이 제시한 대북관계개선 전제조건인 일부 충족을 통해 양국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駐韓美軍의 존재나 韓·美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시현해 온 것도 그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對日관계와 마찬가지로 핵문제가 최대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美國의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北韓은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對美정책방향의 수립에 더욱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추가부담이란 「인권」문제로서, 지난해 7월의 민주당정당 등에서 비록 北韓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인권문제를 대외관계의 주요 척도로 삼을 것임을 명시·천명함으로써 부시행정부에 비해 인권문제가 對北관계개선 전제조건으로 보다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對한반도안보정책면에서는 공화당정권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美國의 새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北韓으로서는 對北자세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다. 예컨대 아시안 월스트리트紙와의 회견(92.10.26일자)에서 당시 클린턴 후보는 한반도내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려는 韓國 정부의 노력과 핵확산방지를 위한 IAEA의 對北韓활동 지원, 北韓의 핵문제 미해결시 심대한 경제·정치적인 손해초래 경고, 韓國에 대한 위협존재시 동북아 미군의 계속 주둔 및 韓·美방위공약 준수 등을 천명한 바 있고, 이러한 對한반도의 기본골격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美·日과의 관계개선 위해 「우회전략」 채택

따라서 美國에 대한 北韓의 일부 유화적인 정세나 클린턴 정부의 對北 적대정책 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핵문제와 인권문제에서 가시적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클린턴 정부가 北韓에 대한 기존의 압력행사방식 이외의 핵문제 등 한반도의 핵심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의 창설 등 또다른 국제적 압력방법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北韓은 對美관계에서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金日成이 신년사에서 美國을 지칭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강도를 낮추고 유관국들의 냉전시대 정책시정과 함께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강도있게 재천명한 것도 미국 신정부의 대북자세 경색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방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 등으로 인해 대미·일관계의 가시적 진전이 어렵다고 보고 西歐 및 아시아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강화에 역점을 두어 이를 통해 對美·日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우회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경제협력 대상이던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에 대한 보완이 절실했던 北韓으로서는 이미 西歐와 주변 아시아국가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처해 왔다. 이와 관련해 北韓이 西歐의 이태리와 아시아의 대만, 필리핀, 태국 등과 관계개선에 주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태리와는 작년 9월 訪北한 국제대외교류재정그룹 이사장 일행을 金正日이 西歐의 고위인사들로서는 최초로 단독접견할 정도로 관계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이태리를 서구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로 미루어 금년에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서구와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아시아권에서는 대만과 태국을 축으로 삼아 경제협력대상국의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우회전략도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北韓의 시장자체가 이들에게 결코 매력적이지 못한데다 西歐는 이미 핵문제 등에서 韓國·美國과 공동보조를 수차 다짐해온 상태이고, 특히 대만의 경우 韓·中수교에 대한 반발로 인한 일시적인 對北접근 성격이 강함으로써 대만·한국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北韓에 대한 관심 역시 상대적으로 감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北韓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美·日을 축으로 전방위외교를 전개할 것이나 핵 등 한반도 상황의 급진전이 없는 한 외교적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3. 南北關係

金日成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南北문제에 관해서 시종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주장인즉 그들은 시종일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고 했다.

또한 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은 민족자주의 통일사상을 구현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지난 20년동안 조국통일운동이 전국적 범위에서 확대발전되어 왔다고 했다.

南北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채택과 발효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성과로서 통일을 가까이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南韓당국자들이 부당한 구실로 합의서의 이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민족자주의 통일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외세에 의존해서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방후 오늘까지 온갖 희생을 무릅쓰며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한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통일 때문인 만큼 민족자주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 근본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원칙을 부정하는 한, 대화나 통일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고려연방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만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통일을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라면 누구와도 과거를 묻지 않고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이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金日成은 통일문제는 그 해결의 주체가 우리 민족이지만 동시에 有關國들도 적극 협력해야 할 국제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 통일문제의 自主원칙 강조

그의 주장은, 유관국들이 국제적 정의의 원칙에 맞게 조선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입장에 서야 그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의 앞길에는 아직도 장애와 난관은 있으나 민족자주에 입각한 그들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韓이 지금까지 對南관계에서 변함없이 견지해 온 것은 對南적화혁명노선이다.

7·4공동성명 이후 지난 20여년간 北韓은 남북대화와 병행해서 대남도발행위를 부단히 획책해왔다.

北韓은 대화의 시작과 더불어 휴전선일대에 지하땅굴을 판 것을 비롯해서 대화의 일방적 중단을 되풀이해 왔으며 판문점 도끼살인만행·버마 암살폭파사건·대한항공여객기 폭파사건 등의 테러만행은 물론 무장공비침투·간첩단사건·어선남북사건과 같은 온갖 형태의 對南도발을 자행해 왔다.

그런가 하면 남한내에 지하당구축을 획책하는 한편, 남한의

재야세력을 선동하여 반체제세력의 확산과 사회혼란조성을 부단히 꾀해왔다.

金日成은 이러한 과정에서 南北대화가 높은 단계, 다시말해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채택발효는 그러한 결과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역시 그들의 대남적화혁명 노선에 입각한 대화전략의 일환으로서 민족자주의 원칙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의 다른 표현임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대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채택발효가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 자주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北韓은 그 이행을 거부하고서 오히려 南韓당국자들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이행을 방해했다고 조작하고 있다.

◆ 고위급회담 중단은 對南전략전술의 수포가 원인

그렇다면 어째서 합의사항 이행을 방해한다는 부당한 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고위급회담을 중단했음에도 그 사실을 기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이 그들의 대화전략에 의한 것으로써 그 전략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고위급회담 속계를 거부한 것이지 南韓당국의 방해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金日成의 신년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채택발효를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은 민족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통일을 가까이 내다볼 수 있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같은 사실중에 하나인 것이다.

말하자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채택발효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그 이면에서 「남한조선노동당 간첩단사건」을 획책해옴으로써 그들의 대화를 통한 대남전략에 승산이 있었다는 의미인 것이며 따라서 고위급회담의 중단은 이 사건이 폭로됨으로써 그들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고위급회담의 거부구실을 틱스피리트훈련의 재개로 내세웠다고는 해도 이와같은 사실을 金日成이 공식화하게 되면 對美·日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 그들로서 이익이 될 것도 없지만, 틱스피리트훈련이 계속되는 한 대화를 통한 그들의 對南전략은 다시 구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金日成은 신년사에서 틱스피리트훈련 자체에 관해 언급을 피하고 그 재개현상만을 민족자주의 통일원칙과 결부시켜 南韓을 간접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이른바 민족자주의 원칙 의미가 이러할 진데 『민족자주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 근본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도 그들의 對南적화혁명노선의 불변을 재확인 해주고 있다.

◆ 민족자주원칙하에 고려연방제 실현 다짐

그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해방이후 오늘날 까지 희생을 무

를쓰면서 지속해온 투쟁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對南관계의 뚜렷한 새로운 방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4대군사노선의 철저한 관철을 역설하고 있는가 하면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고려연방제의 계속적 실현을 다짐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실예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조국을 통일하려는 태도라면 누구든지 과거를 묻지 않고 마주 앉겠다는 통일전선전략의 속셈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점에서 그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족자주의 입장은 그들에게 동조적 성향의 개인 또는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고려연방제가 상층통일전선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층통일전선 형성의 속셈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대민족회의」나 「전민족회의」 또는 「정치협상회의」 등의 소집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이 내세운 민족자주의 원칙이 그들의 대남적 화혁명노선의 의미라는 것은 통일문제에 有關國들이 적극 협력해야 할 구체적 문제라고 주장한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물론 金日成의 이와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여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대내외적 속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현정세는 복잡하지만 대외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자주·평화·친선의 對外정책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한 점에서 有關國 운운하는 언급은 다분히 對美·日 관계 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對美·日 관계 개선은 北韓이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또 美國·日本 등은 그에 앞서 남북상호핵사찰과 더불어 北韓사회의 개방 그리고 南北韓의 문제는 대화를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 有關國 협력 주장은 對美·日관계 개선이 목적

따라서 이에 관한 주체적 방안제시나 언급이 없고 보면 有關國 운운하는 언급은 아무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有關國의 협조운운 하는 金日成의 발언은 통일문제에 있어 그들의 입장이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보려는 시도인 것이며, 北韓의 이른바 민족자주의 원칙에 대한 진의를 숨기기 위한 위장 내지는 기만책일 뿐인 것이다. 金日成이 신년사에서 對南·對美 비난이나 對南 反정부선동 등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때문이다.

따라서 金日成이 신년사를 통해 주장한 이른바 민족자주의 원칙은 이러한 미명아래 그들의 기존 대남적화혁명노선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北韓의 기존 대남적화혁명노선에서 볼 때 남북간 기본합의서나 비핵화선언의 채택발효는 분명 하나의 변화로서 이것이 北韓의 對南노선에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채택발효 조차도 민족자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방후 오늘까지 변함없이 투쟁해온 결과이며 양보할 수 없는 통일의 근본원칙이라는 주장이 그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4대군사노선의 철저한 관철과 더불어 통일의 앞길에는

장애와 난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르는 통일위업이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사실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南北 대화와 통일문제에 있어 北韓이 어떠한 입장과 자세를 견지할 것인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첫째는 남북대화나 통일문제 등 南北 관계 문제에 있어 北韓은 조금도 그들의 기존노선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그러한 의사도 없음을 의미하는 만큼 앞으로의 남북대화나 통일논의도 이와같은 차원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설사 어떠한 형태든 간에 南北간의 회담이나 대화도 어디까지나 이와같은 노선을 관철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화의 재개를 그들이 획책하는 바에 따를 것이며, 따라서 대화의 중단 역시 언제나 일방적으로 서슴치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그런만큼 설사 대화가 재개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만 거듭할 뿐이지 실질적인 합의사항은 기대할 수가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에 있어서는 남북합의서나 비핵화공동선언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그들의 대외적인 관계개선 장애가 되고보면 대화는 재개할 것일지언정 이를 그들의 통일전선전략 차원에서 그 활용을 확대해 나가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와같은 그들의 전략 내지는 전술에 차질

이 있을 경우 일방적 대화중단 이상의 책동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4. 南北經濟交流

北韓 경제의 93년도 視界는 극히 불투명하며 이에 따른 南北경제교류 전망도 예측을 不許케 하고 있다.

金日成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의 경제치적에 대해서도 합구, 北韓의 당면한 經濟難의 深度를 반영해 주었다.

제3차 7개년 계획의 5차년도(91년)를 끝마친 北韓경제는 중앙재정의 고갈과 외채의 가중한 압력으로 신규투자의 제약을 받는 등 경제적 불구로 규정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같은 北韓의 당면한 經濟難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폐쇄경제체제의 한계속에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GNP추정 결과에서 나타난 지난해 北韓경제의 두드러진 특성은 무역규모의 대폭감소와 지속적인 무역역조에 따른 외화부족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공급부족과 원자재난이 가중돼 산업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된 것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北韓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온 제3차 7개년계획은 1991년도까지 5년간 평균 성장율은 -0.04%의 성장율을 기록하여 이 계획기간 중 연평균 성장율 목표인 7.9%에 크게 밀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0년도 -3.7%, 1991년도 -5.2%의 연속적 마이너스 성장율을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경제의 침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무역부문에서도 舊蘇聯 등 東歐사회주의 국가들과의 經協구조가 깨지면서 1991년도 무역총액은 수출 10억1천만달러, 수입 17억1천만달러로 교역량면에서 1990년보다 42%나 줄어든 27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北韓의 무역적자는 계속 누적돼 외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1991년 말 현재 北韓의 외채총액은 92억8천만달러로써 총수출규모의 약 9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식량과 에너지 등의 수입의 제약을 가져와 기간산업활동의 위축을 물론 경제상황 전반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제침체 더욱 加重될 듯

또한 외화부족이 심각해서 원유도입량이 전년보다 25% 감소하고 여기에다 주에너지인 석탄의 생산량이 6.5% 줄어들면서 전력생산까지 4.6% 감소하는 등 에너지 사정이 한층 악화됐다.

이러한 에너지 부문의 부족현상은 산업시설 가동에 큰 영향을 미쳐 1991년 현재 北韓의 공장가동율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활동의 동력부문에서 차질이 빚어진 한편으로 원자재 수입감소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생산감소세가 두드러져

제조업생산의 감소세가 가속화됐다.

이와함께 北韓의 「자력갱생」 경제를 지탱해온 광업생산이 채굴여건악화와 장비·기술의 낙후로 인해 6.8% 감소함으로써 北韓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부문도 광공업품의 생산감소로 물동량이 줄어든데다 만성적인 수송난으로 도산매·운수업생산이 감소세를 타나낸 반면 관리행정·국방등 정부부문의 종사자 수가 증가, 모두 2.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을 뿐이다.

특히 北韓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최우선정책 및 국방과 경제건설 병진정책 등의 추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기형적 산업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軍·産복합형의 중공업부문에 편중 배분함으로써 산업부문간 불균형을 초래함과 동시에 산업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의 형성에 제약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당면하고 있는 經濟難 타개와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는 대외협력이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3차 7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된 과학기술혁신문제는 北韓의 경제성장전략 즉 양적인 노동투입증가에 의한 외형적 성장전략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어 성장전략자체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으며 결국 북한의 對西方 경제개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내부경제구조 취약으로 대외경제협력 한계 露呈

그러나 北韓은 경제구조자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확대와 적극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도 간과될 수 없다.

지난 1984년 채택한 합영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北韓이 합영법을 채택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꾀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 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합영법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北韓의 합영법 실적이 저조한 것은 선진국 자본이北韓에 진출할 만한 경제적 시장의 가치성이 없는데다가 中國이나 東歐圈 국가들의 선례와 같은 경제개혁을 통한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北韓의 내부요인이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北韓의 합영법 실적이 부진한 요인은 △북한경제체제와 투자제도 사이의 모순 △당의 통제에 따른 기업경영의 경직성 △北韓의 낮은 대외신용도에 따른 투자위험 부담 △경영진의 경직성 및 관리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합영법을 대폭 보완, 지난해 10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발표했으나 이 역시北韓의 통제된 개방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주체사상에 의한 자력갱생의 원칙과 외국인의 투자제도는 상충되는 것이며北韓당국의 개혁 및 개방의지 결여로 투자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자유로운 노동력 확보와 원자재 구입이

불가능하다. 이윤보장 및 투자회수도 불확실하며 시장이 협소하고 낮은 기술수준과 미흡한 내자동원·취약한 사회간접자본 등 어려운 요소가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통제된 개방경제 추진 모색

이렇게 볼 때 구조적으로 서방자본의 진출매력을 상실한 北韓경제의 조건에서 그나마도 외자유치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내경제체제의 개혁을 통한 수용능력을 제고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쇄체제를 고수해왔고 공산권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스탈린식 통제·명령 경제체제를 지속해온 北韓경제가 과연 주민의 의식변화·합리주의 경향대두·실용주의 노선으로 연결되는 경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

본격적인 대외개방정책을 단행할 경우 中國에서 나타난 민주화와 같은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현상에서와 같이 개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사고와 행동양태의 발로는 金日成·金正日の 유일적 지배체제를 뒷받침해온 사상의 지적 통일단결을 약화시켜 체제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제구조는 그대로 둔채 대외경제개방을 하는 것이지만, 北韓은 대외개방 역시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대외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

이다.

따라서 北韓은 대외개방이 北韓주민에게 주는 영향을 극소화시켜 체제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된 개방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北韓은 1991년 12월 28일 두만강경제특구개발계획을 北韓의 공식정책으로 확정한 것과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을 제정·발표한 것도 외국투자자들이 北韓內에 합작·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100%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경우 나진·선봉지구 등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北韓의 「통제된 개방정책」의 고충을 보여주고 있다.

◆ 南北경제협력은 경제回生の 외길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문제는 민족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볼때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경제협력이야말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단일민족이란 공동체의식을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南北의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과 교류가 성공된다면 이는 바로 통일을 앞당기는 지렛대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볼때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에 따른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는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남북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분야 1조에서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을 공동개발하고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와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합의한 것은 南北관계 개선은 물론 민족공동번영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특히 이 시점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진전시켜야 할 요인으로는 첫째, 南北韓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남북경제 교류에 유리한 방향으로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최근 對러시아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對中國 경제관계를 적극 강화하는 한편 對日本 수교회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미 희생불능 상태에 빠진 北韓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南北간의 경제협력 문제는 그만큼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둘째, 날로 악화되고 있는 北韓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교역이 88년만해도 1백여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89년에 2천2백여만달러, 90년에 2천5백여만달러 그리고 91년에는 2억달러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南北韓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될 전망이며 이같은 협력의 증대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北韓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다.

셋째,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과 92

년 8월 韓國과 中國의 국교수립의 영향으로 인해 北韓주민들의 불만과 생활수준 향상 요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러한 불만해소를 통한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北韓은 韓國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절실한 입장이다.

따라서 금년도 南北韓 경제교류의 성공적 실현여부는 전적으로 北韓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팀스피리트훈련을 담보로 중단시킨 남북고위급회담을 재개하고 부속합의서 실천기구인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세부적인 협력방안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내외통신 제830호~832호)

北韓의 黨·政 改編 動向

北韓은 지난 12월 10일과 11일 연이어 개최된 黨6기 20차전 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를 통해 정무원총리를 바꾸는 등 대대적인 黨·政개편을 단행했다.

또 이에 앞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서도 金容淳을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에 기용하는 등 부분적인 인사조치를 취했다.

이밖에도 정무원 국가검열위원장에 지난 4월 전문섭을 재기용하는 등 4~5차례에 걸쳐 黨·政고위간부를 교체했다.

北韓의 이같은 일련의 黨·政고위인물 교체는 회수와 규모 면에서 지난 88년이후 최대규모로 꼽히고 있고 또 「정치적 의미」도 그만큼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확고한 金正日후계체제 구축과 함께 南-北관계 및 대외개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黨·政인물 교체는 필연적으로 대상자들에게는 권력에서의 부침을 맛보게 했는데 姜成山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姜成山은 지난 84년 1월부터 86년 12월까지 총리를 지내다 함북도 당책임비서로 좌천됐었다.

31년 3월 3일 함북 경선군에서 출생한 姜成山은 北韓에서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된 72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총리에 두번 기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난 84년 총리로

재직할 때에는 대외개방 및 선진기술 자본유치를 위한 「합영법」을 제정하는데 주역을 맡기도 했다.

姜成山과는 반대로 전임 총리 延亨默은 금년에 가장 「쓴맛」을 본 인물로 꼽히고 있다.

經濟難 심화에 대한 문책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총리에서 해임된 직후 黨정치국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채 자강도 당책 겸 인민위원장으로 크게 밀려났기 때문이다. 특히 延亨默이 黨정치국원 자리마저 빼앗긴 것은 姜成山이 지난 86년 총리직에서 해임돼 함북도당책으로 밀려났지만 黨정치국원자리는 그대로 유지했던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 延亨默 당분간 再起는 어려울 듯

北韓에서 총리를 지내다 해임된 이후 黨정치국원 자리를 내놓은 인물은 86년 12월부터 88년 12월까지 총리를 지내다 反金日成派로 몰려 숙청당한 李根模를 제외하고는 한명도 없어 延亨默의 재기는 적어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姜成山과 함께 금년에 권력핵심으로 더욱 부상한 인물로는 金達玄과 金容淳 등을 꼽을 수 있다.

金容淳은 對美·日 외교의 주역으로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으로 기용됐고 12월 黨정치국후보위원으로 승격됐다.

金達玄은 지난 88년에 이어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재기용됐고

역시 黨정치국후보위원으로 승격됐는데 金容淳과 金達玄의 승격은 앞으로 北韓의 대외정책과 南-北경제협력 추진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을 높여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金容淳과 金達玄은 北韓 권력내부에서 개혁 주도인물 이면서도 金日成-金正日의 인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대성은행 이사장 崔奉萬과 黨3대혁명소조부장 張成澤, 그리고 黨검열위원장으로서 기용된 李奉吉과 黨비서로 선출된 金國태 및 金기남등도 앞으로 北韓 권력 상층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黨중앙위원으로 보선된 崔奉萬과 張成澤은 그동안에도 金正日의 「秘資金」 및 조직관리를 맡아왔는데 이번 승격으로 더욱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張成澤은 金正日의 매제라는 후광까지 업고 있어, 이미 일부에서는 金日成-金正일에 이어 실질적으로는 北韓 권력서열 3위라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崔만현·주길본·한상규 등은 권력내부에서 일단은 밀려난 인물들로 분류되고 있다.

◆ 사망 주요인물은 徐哲 등 6명

금속공업부장 崔만현·화학공업부장 주길본은 延亨默 경제내각의 주요멤버로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서, 중앙검찰소장 한상규는 최근들어 점증하고 있는 北韓주민들의 사상적인 해이 및 이탈현상에 대한 문책으로 각각 밀려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 9월 보건부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 이종
올도 금년에 북한 권력내부에서 밀려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금년에 北韓에서 사망한 주요인물은 6명에 이르고 있
다.

서철을 비롯, 현무광·방학세·전인철·이찬선·이정복·석
기춘 등이 그들이다.

徐哲은 金日成의 이른바 「항일빨치산 동료」로 사망전까지
黨정치국원으로 있었다.

사망원인은 「오랜병환」, 나이는 85세이고 北韓은 지난 10월
2일 徐哲의 장례를 金日成·金正日·吳振宇 등 黨·政·軍고
위간부 50명으로 구성된 장의위원회를 통해 「국장」으로 치뤘
다.

徐哲은 지난 89년 11월 실시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한 이후부터 일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아왔다.

黨정치국후보위원 서열 1위였던 현무광 역시 「黨원로」로 지
난 2월 28일 병으로 사망했다.

나이는 76세였고 사망전까지 黨검열위원장 자리에 있었다.

지난 3월 2일 사망한 외교부副부장 전인철은 北-日 수교본
회담 북측 대표단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평양 선전기관들은 『전인철이 불치의 병인 암으로 앓다가
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68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했
다』고 보도했었다.

전인철은 1924년 12월 평양에서 출생했고 58년 5월 의무성
3등 서기관으로 외무관료생활을 시작했다.

黨중앙의원 겸 黨조직부副부장이던 이찬선은 지난 5월 2일

에, 중앙 재판소장이던 方學世는 지난 7월 20일 각각 「持病」으로 사망했다.

이찬선은 67세, 方學世는 78세였는데 특히 方學世는 蘇聯 2세파로 北韓 정권초기부터 활동해온 인물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왔다.

반면 黨중앙위후보위원 겸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黨책임비서 석기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7월 12일에 사망했는데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표 1〉 黨정치국원 명단

정권창립 44주 기념보고회 주석단(92.9.9)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 의(92.12.11)	
金日成	金正日	金日成	金正日
吳振宇 (인민무력부장)	李鍾玉 (부주석)	吳振宇 (인민무력부장)	李鍾玉 (부주석)
朴成哲 (부주석)	延亨默 (총리)	朴成哲 (부주석)	姜成山 (총리)
金永南 (외교부장)	崔 光 (軍총참모장)	金永南 (외교부장)	崔 光 (軍총참모장)
桂應泰 (黨비서)	全炳浩 (黨비서)	桂應泰 (黨비서)	全炳浩 (黨비서)
韓成龍 (黨비서)	徐允錫 (평남도당책)	韓成龍 (黨비서)	徐允錫 (평남도당책)
姜成山 (함북도당책)	徐 哲 (92.9.30사망)		

〈표 2〉 黨정치국후보위원 명단

정권창립 44주 기념보고회 (92.9.9)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 (92.12.11)	
崔泰福 (黨비서)	崔英林 (副총리겸 국가계획 위원장)	崔泰福 (黨비서)	崔英林 (副총리겸 금속공업부장)
金鐵萬 (국방위원)	洪成南 (副총리)	金鐵萬 (국방위원)	洪成南 (副총리)
金福信 (副총리겸 경공업 위원장)	강희원 (副총리겸 평양시행정 경제위원장)	金福信 (副총리겸 경공업 위원장)	강희원 (副총리겸 평양시행정 경제위원장)
洪時學 (副총리)	李善實	洪時學	金達玄 (국가계획 위원장)
		金容淳 (黨비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延亨默 (자강도당책겸 인민위원장)
		李善實	

(내외통신 827호)

북한 경제건설 현황 및 경제선동 실태

北韓은 '92년에 약 80개의 건설대상을 완공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비교적 많은 건설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건설 실적은 북한이 金日成의 80회生日과 金正日의 50회生日을 기해 이들의 치적선전을 위해 대부분의 건설대상을 金父子生日에 맞춰 완공토록 독려한데 따른 것으로서 北韓의 경제사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92년에 완공된 건설대상중 平壤-開城간 고속도로, 통일거리주택건설, 사리원카리비료공장 1단계공사 등 대형 건설대상들이 대부분 工期를 몇차례씩 연기한 끝에 금년에 가까스로 완공한 것이나 '92년 상반기중에 60여건의 건설대상을 완공했을 뿐아니라 특히 金父子의 生日이 들어있는 2월과 4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92년 북한의 경제건설 실적중 주목되는 것은 내용면에서 기간산업과 생필품생산시설 그리고 광산 등의 건설이 두드러진 점이다.

북한은 '92년에 총연장 1백70km의 平壤-開城간 고속도로를 착공(87.12) 5년만에 완공(4.2)한 것을 비롯해 平壤市 궤도전차 2단계1구간(문수-토성, 12km)공사(4.1), 平南 순천-북창간 46km 도로포장공사(2.14), 咸興-赴戰간 전철화공사(9.8), 興南港부두확장공사(4.28) 등을 완공함으로써 교통운수부문의 기간산업 확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산업부문과 함께 북한경제의 또다른 취약점인 生必品生

産을 위해 북한은 '92년에 비교적 많은 약 20개의 생산시설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가량이 의류생산시설이며 특히 이들은 의화별이를 목적으로 한 수출용 피복공장이어서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92년에 완공된 건설대상중 합영 또는 합작회사(8개)와 유엔 개발계획·조총련 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으로 건설된 것(9개)이 17개나 되는 것도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8개의 합영 또는 합작회사는 의류관련 회사가 4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공운수회사·수산물가공회사·광업회사·인쇄회사 등이 각각 1개이다. 그리고 합영대상은 북한의 명예총회사와 일본의 알반가라리주식회사가 합작·운영하는 「명예고급기성복공장」(6.3)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총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92년에도 변함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주민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주민선동집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그러나 '92년에는 선동집회의 규모면에서 중앙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10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줄어든 대신 각 생산단위별로 개최하는 소규모 집회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金父子의 生日등 일정계기 때마다 주민 선무를 위해 갖가지 형태의 상훈을 무더기로 수여하고 특히 金正日시대의 개막에 따라 金正日 명의의 「감사문」을 전달하는 등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참여토록 유인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각종 선동집회와 함께 북한은 '92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90년대속도 창조운동」을 바탕으로 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

동」·「정춘실운동」 등 기 제기된 노력경쟁운동을 강화해 나가
는 가운데 金正日이 원수로 추대된 것을 계기로 軍-民일체감
조성을 위한 「軍-民일치모범郡쟁취운동」을 새로이 전개했다.

「軍-民일치모범郡쟁취운동」은 3월 18일 중앙인민위 政令을
통해 「軍-民일치모범郡칭호」를 제정함으로써 구체화했는데
지난 8월 13일 開城市 장풍郡에 최초로 수여됐다.

'92 주요 경제건설 현황

날 자	내 용	비 고
1. 20	江界건방직공장 준공	건평 1만평, 누에고치로 명주 실 생산
2. 6	평양피복합작회사 조업	평양시 피복공업총국과 조총 련 유경무역주식회사 합작
2. 10	광운합작회사 조업	함영공업총국과 조총련 광영 건설(주)이 합작한 관광운수 회사
2. 10	홍산광산 개발	鐵精鑛生産
2. 11	인구연구소확장공사 준공	유엔개발계획·유엔인구활동 기금 지원
2. 12	은하무역총국피복설계현대화 공사	유엔개발계획 지원
2. 12	삼방연합합영회사	수산위 협동수산지도총국과 조총련 산교종합무역주식회 사간 합영, 수산물 가공처리

날 자	내 용	비 고
2. 13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확장 공사	
2. 13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사출직 장완공	
2. 13	평양인곡광산 개발	
2. 13	平南道 발관계수로 건설	총길이 3백20km
2. 14	순천-북강간 도로포장공사 완공	총길이 46km,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2. 20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석탄 분쇄장 건설	연간 12만톤 생산 규모
3. 5	西평양-서포3동간 무궤도전 차공사	
3. 16	雲山합영청년광산 사곡坑 건 설	
3. 26	사리원카리비료공장1단계공 사완공	카리장석 1백만톤처리 능력, 유엔개발계획 지원
3월	함흥소금공장	부지면적 2만4천m ² 연건평 1 만3천m ² 91.10 착공, 연간 수 십만톤 생산
4. 2	金策제철확장공사 완공	제2용광로 확장
4. 2	平壤-開城간 고속도로 개통	총연장 1백70km, 폭 24m(4 차선), 틀게이트 12개소, 터 널 27개소

날 자	내 용	비 고
4. 4	해주시 상수도공사 완공	해주제련소 해주화력발전소 등에 공업용수 공급
4. 9	西海감문-甌山간 수로공사 완료	총길이 60km
4. 9	전진합영회사 조업	철도피복공장과 조총련 오사카 이쿠노상공회간 합영, 철도운수부문 종사자 작업복 생산
4. 10	구성104호공장 완공	평북 구성소재, 계수조정식 공작기계 생산
4. 10	원자력연구소 입자가속기 조립완료	유엔개발계획 지원
4. 11	咸南 신흥-부전간 철도전기화완공	함흥-부전간 전철화공사 1단계구간
4. 11	3·4공장 완공	평양시 소재, 통신설비 생산
4. 12	순천동약공장 완공	부지면적 5천m ² , 10여종의 보약 및 1백20여종의 東藥생산
4. 12	통일거리준공	2만세대의 주택단지 조성
4. 13	곽산간석지개간 완료	곽산군염호리-천태리간 8km 연결
4. 13	고원발전소 건설	수로 3백87m, 송전선 16km
4. 14	애국최정락피복공장 준공	평양소재, 在日조총련동포 최정락의 자금지원으로 건설

날 자	내 용	비 고
4. 17	평양시 궤도전철 2단계1구간 개통	문수주차장-토성간 12km
4. 28	平城市 무궤도전차 개통	평성동-배산동간 6km
4. 28	興南港 부두확장공사 완공	3만톤급대형화물선 및 중소 형화물선 접안부두 건설
5. 3	平壤 박천수로확장공사 완료	총길이 28km
5. 4	서해감문-은률-과일군간수 로공사	기본수로 1백4km
5. 6	2·8직동청년탄광확장공사 완 공	平南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 소內 소재, 2만톤 규모의 새 로운 坑건설
5. 16	길주펄프磨碎펄프직장 건설	威北길주 소재
5. 30	城津제강고압강관생산공장 건설	威北 金策市 소재
6. 1	평양어린이식료공장 확장공 사 완공	
6. 3	명예고급기성복공장 설립	북한 명예총회사와 일본 알 반가라리주식회사간 . 합작운 영
6월초	개성피복공장 완공	조선광명무역총회사와 조총 련계 무역상사 합작
6. 17	수치조정장치분공장 건설	6·1전기기구종합공장(威興) 內

날 자	내 용	비 고
7. 13	애국접착제 직장	과학원 威興분원 실험기구 종합공장內
9. 3	평양천연향료연구소건립	유엔개발계획 지원
9. 3	삭주직물공장 현대화공사	平壤 삭주소재, 부지면적 2만 5천m ²
9. 6	고압관 생산공정 완공	성진제강연합기업소(金策市) 內
9. 8	함흥-신홍철도전기화 완공	총 40km, 함흥-부전간 전철 화 2단계구간
10. 5	威興市 상수도확장공사 완공	총 2만1천8백m의 송수관 연 결
10. 8	평성옷공장 시설현대화공사	은하무역산하 공장
10. 14	平川정화장 정화계통공사완 공	平壤 대동강 기슭에 위치, 대 동강으로 유입되는 폐수정화
10. 22	광만합영회사	광업부와 조총련 금만총업주 식회사 공동 투자운영
10. 22	금만합영인쇄공장	북한과 조총련상공회부회장 박금만(금만총업주식회사회 장)공동출자 운영
11. 28	염소시험목장 완공	유엔개발지원
11. 28	고기가공공장	양강도 대흥단군 소재, 연건 평 1만2천m ²

'92 주요 경제선동 집회

날 자	내 용	비 고
2. 28 ~29	전국축산부문열성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延亨默 당비서 서관희 농업위원장 김원진 참석 • 당축산정책관철독려 · 축산물 증산대책토의
3.18~ 4월末	전국기술혁신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5백여종 3만8백여건의 전기 · 채취 · 전자자동화 창안품 전시
5. 10 ~13	제7차 중앙과학기술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성과 및 활동경험 총화 • 金正日이 전국과학자대회(91. 1.28~29)에 보낸 서한에서 제시한 과업토의
5. 16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부문 종사자들의 역할배가 촉구
8월초	道別 洞 · 인민반간부 열성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1붉은기洞(인민반)쟁취운동」강화 위한 대책토의
8.25	전국농근맹 선전일군 경험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비서 金仲麟 등 참석
8.28	전국숨은공로자들의 경험토론회	
11.2 ~3	전국직맹 초급단체위원장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맹 초급단체 사업성과 및 경험 총화

날 자	내 용	비 고
11. 23 ~25	전국열관리원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주석 李鍾玉, 총리 延亨默, 당비서 崔泰福·韓成龍·朴南基 등 참석 • 열관리개선 방안 및 에너지수급대책 토의

(내외통신 826호)

北韓의 對外經協 및 外資誘致 관련법 發表

1. 概 要

○ 北韓은 2.6에 今年 1.31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에서 채택한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外國人投資關聯 3個 法律을 發表하였음.

※ 3個 法律의 構成

區 分	主 要 內 容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8章 57條 6附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基本 • 企業所得稅 • 財產稅, 相續稅, 去來稅, 地方稅 • 制裁 및 申訴請願 등 <li style="padding-left: 2em;">* 附錄은 各章 稅率表
外貨管理法 (4章 31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貨管理法의 基本 • 外貨의 移用 • 外貨의 搬出入 • 制裁 등
自由經濟貿易 地帶法 (7章 43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의 基本 • 管理機關의 權限과 任務 • 經濟活動條件의 保障 • 通貨, 金融, 擔保 및 特惠 • 紛爭解決 등

2. 分 析

- 이 『3個 法律』은 '92.10 발표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등에 대한 後續措置의 일환이며 그 特徵은 다음과 같음.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

- 대부분 中國의 關聯法을 援用한 것으로 보이나, 中國과는 달리 外國投資家들에 적용할 각종 稅制를 하나로 統合한 것이 特徵임.
- ※ 中國의 경우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企業所得稅法』, 『個人所得稅法』, 『工商統一稅』, 『都市不動產稅』, 『車輛·船舶 使用許可稅』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음.
- 內容面에서는 기존의 外國人投資關聯法들과는 달리 비교적 구체적임. 適用稅率도 대부분 중국보다 낮게 되어 있어 外國企業이 中國에 進出하는 것보다는 다소 有利하게 되어 있는 것이 特徵임.
 - － 예를 들면 企業所得稅率은 決算利潤의 25%(自由經濟貿易地帶內 企業 14%)로서 中國의 30%(經濟特區·開放區 15%)보다 낮음.
 - － 이는 UNDP의 豆滿江開發計劃과 관련하여 外資誘致面에서 中國과 競合關係에 있음을 意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個人所得稅의 경우에는 中國에 비해 다소 不利함.
 - － 北韓의 경우 “공화국 영역 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고 規定(第17條)

- 中國은 『個人所得稅法』 및 同法 施行細則에서 1年 이상 5年 미만 住居者는 外國에서 取得한 所得中 中國으로 送金된 部分에 대해서만 所得稅 納稅義務를 부과

(*6년째부터는 北韓과 同一)

- 相續稅 관련 條文은 특히 在日同胞 企業人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朝總聯系 北送同胞들이 在日家族으로부터 받게 되는 財產相續分을 北韓으로 還收하기 위한 措置로도 볼 수 있음.

- 相續稅의 경우 “公和國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公和國 영역 밖에 있는 財産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고 規定(第31條)

- 한편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를 통해 南北間에 『二重課稅防止』 및 『投資保障』에 관한 合意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에 발표된 稅法과 相衝될 素地가 있음.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고 규정(第7條)

- 따라서 南北間 合意를 國家間的 協定으로 볼 경우 同協定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만약 協定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南北間에 租稅와 관련한 보다 유리한 合意가 이루어지더라도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이 적

용될 수 밖에 없는 矛盾이 惹起될 수 있음.

※ '92. 10月 채택된 外國人投資關聯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企業의 對北 投資時에도 이 법이 適用될 것임을 示唆하고 있음.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동포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規定(第6條)

【外貨管理法】

- 外貨去來와 外貨有價證券의 發行 및 그 搬出入에 관한 原則과 秩序를 規制하는데 目的을 두었음.
- 이 法은 北韓住民과 北韓 領域內에서 外貨를 사용하는 企業이나 個人은 물론 北韓 領域 밖에 居住하는 “朝鮮동포” 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음.
- 또한 이 法에서 外貨·有價證券·貴金屬 등의 搬入이나 外國投資家가 企業運營에서 얻은 利潤, 其他 所得金의 送金 및 自己資本 移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이 特徵임.

【自由經濟貿易地帶法】

- 自由經濟貿易地帶의 創設과 이를 效果的으로 管理運營하여 對外經濟協力과 交流의 擴大發展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
- 이 法은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는 北韓의 主權이 行使되나 이 地帶는 북한이 특별히 세운 制度와 秩序에 따라 經

濟貿易活動을 遂行하는 地域으로 규정함으로써 市場機構가 機能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 또한 이 地帶는 『對外經濟委員會』와 『地帶當局』이 開發 및 管理運營의 責任을 지도록 하였으며, 外國投資家에 대해서는 土地의 賃借가 가능하고, 일부 大衆 消費品을 제외한 商品價格은 市場價格(販賣者와 購買者의 合意)으로 決定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外國人投資關聯法들과 마찬가지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 經濟活動을 할 수 있다고 規定, 우리 企業이 進出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 지난해 10月 以後 발표된 外資誘致關聯 法律들을 볼 때 北韓은 中國式 모델에 따라 우선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를 중심으로 經濟開放實驗에 착수한 후, 成功할 경우 開放地域을 점차 擴散해 나갈 것으로 展望됨.
- 이와 같이 北韓이 '92.10 外國人投資關聯 3個 法律을 制定한데 이어 年初부터 後續法律을 서둘러 制定·發表하는 등 海外投資 誘致를 적극 摸索하고 있는 것은 당면한 經濟難의 打開을 위해서는 對外經濟開放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課題임을 反證하고 있는 것임.
- 요컨대 이 法律의 制定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外國人投資關聯法의 具體性 缺如로 인한 外國人의 對北投資 回避現象은 다소 緩和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政治·社會體制의 閉鎖性 및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落後 등으로 外國人의 對北投

資가 短時日內에 증가될 可能性은 稀薄할 것으로 보임.

※ 既存 外國人投資關聯法

- 合營法('84.9) 및 施行細則('85.3), 合營會社所得稅法('85.3) 및 細則('85.5), 外國人所得稅法('85.3) 및 細則('85.5)
-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92.10)
(위 法律中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細則』, 『外國人所得稅法 및 細則』의 廢止與否에 대한 言及은 없으나 이번 관련 法律의 採擇으로 事實상 廢止된 것으로 볼 수 있음.)

3. 北韓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全文

제 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분리·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투자법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 부기계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 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 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 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 6 조 이 법은 공화국 영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

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공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밖에 지사·출장소·새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 9 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이윤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소득세 예정납부서와 재정 부기

결산서를 내며 연도가 끝난 후 2개월안으로 연간소득세 납부서와 재정 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하며 연간 종합계산은 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청산이 끝난 날부터 15일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영역안에서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율을 적용계산 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부터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 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 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50% 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이윤을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 3 장 개인소득

제17조 공화국 영역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이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노동보수액이 2천원 아래 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1에서 정한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이 법 부록2에서 정한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5%로 한다.

제20조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1에서 정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

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이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고정재산 처음 값의 2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금을 제공한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 한다. 공화국 은행에 저축성 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에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달 15일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 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 납부한다.

제 4 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연기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 영역안에서 소유한때로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3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 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 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4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 대상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 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익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봉사수익금.

제39조 거래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5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 판매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수익금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달 10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감면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 7 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이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 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 노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 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노임 총액의 1%의 세율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시경영세는 월 수입의 1%의 세율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노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한다.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할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에 면허증 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자동차 이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 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 이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 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 이용세의 세액은 이 법 부록6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8 장 제재 및 신고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공제 납부서, 재정 부기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5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의 내용을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월 노동보수액 2천 1원부터 3천원까지 세율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월 노동보수액 3천 1원부터 4천원까지 세율 40원 더하기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월 노동보수액 4천 1원부터 5천원까지 세율 90원 더하기 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월 노동보수액 5천 1원부터 6천원까지 세율 150원 더하기 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월 노동보수액 6천 1원부터 7천원까지 세율 150원 더하기 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월 노동보수액 7천 1원부터 8천원까지 세율 220원 더하기 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월 노동보수액 8천 1원부터 9천원까지 세율 300원 더하기 7천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9%, 월 노동보수액 8천 1원부터 9천원까지 세
을 390원 더하기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월 노동보
수액 9천 1원부터 1만원까지 세을 490원 더하기 9천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5%, 월 노동보수액 1만 1원 이상은 세을
640원 더하기 1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증여소득액 1만 1원부터 2만원까지의 세을 5%, 증여소득
액 2만 1원부터 4만원까지 세을 10%, 증여소득액 4만 1원부
터 8만원까지 세을 15%, 증여소득액 8만 1원부터 20만원까
지 세을 20%, 증여소득액 20만 1원부터 40만원까지 세을
25%, 증여소득액 40만 1원부터 80만원까지 세을 30%, 증여
소득액 80만 1원 이상은 세을 35%.

부록 3 재산세의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건물의 세율은 등록값의 1%, 선박의 세율은 등록값의 1.4
%, 비행기의 세율은 등록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상속액 20만 1원부터 35만원까지 세을 6%, 상속액 35만
1원부터 60만원까지 세을 8%, 상속액 60만 1원부터 80만원
까지 세을 10%, 상속액 80만 1원부터 120만원까지 세을 12
%, 상속액 120만 1원부터 250만원까지 세을 14%, 상속액
250만 1원부터 400만원까지 세을 16%, 상속액 400만 1원부
터 800만원까지 세을 18%, 상속액 800만원 1원부터 2천만

원까지 세율 20%, 상속액 2천만 1원부터 5천만원까지 세율 25%, 상속액 5천만 1원 이상은 세율 30%.

부록 5 거래세의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생산부문의 세율은 생산물 판매액의 1.5%부터 20%까지, 술·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부터 60%까지, 상업부문의 세율은 상품판매액의 2%, 봉사부문의 세율은 봉사수익금의 2%로 부터 4%까지.

부록 6 지방세액표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면허세

- 1) 기업등록, 설립등록, 세액 건당 500원부터 1천원까지, 변경등록세액 건당 40원, 취소등록 세액 건당 40원.
- 2) 광업권등록 : 처음등록 세액 광구당 1천2백원, 변경등록 광구당 10원.
- 3) 어업권등록 : 처음등록 세액 건당 1천원, 변경등록 건당 10원, 취소등록 건당 10원.
- 4) 기술자격면허증 발급세액 건당 20원부터 1천원까지.

2. 자동차 이용세 : 승용차 세액 대당 50원, 버스 12석까지 세액 대당 90원 · 13~30석 세액 대당 100원 · 31석 이상 세액 대당 120원, 화물자동차 세액 적재톤당 20원, 특수차 세액 대당 50원, 자동자전차 세액 대당 20원.

4. 北韓의 「외화관리법」 全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993년 1월 31일) 제27호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이 채택되었다.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
다.

제 2 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
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
증서를 비롯한 외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
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해 공화국영역안에서 거
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
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기관도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쓸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화폐와 바꿔야만 쓸 수 있다.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 7 조 조선원의 외국환자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8 조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제10조 이 법은 외화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안에서 외화를 이용하는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가·외국인과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외화의 이용

제11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 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12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

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 원으로 바꾸어 자기의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화국 국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안에서만 허용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1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이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18조 공화국 영역안에 상주하는 다른나라의 대사관·영사관·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자유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 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화이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있다. 외화를 이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는 분기,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 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영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 영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과 기타 합

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 영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 4 장 제 재

제29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일군과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5. 北韓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全文

제 1 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금융·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 운영사업을 지도한다.

제 4 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 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련한 법과 규정이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7 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제 8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속한다. 대외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

제 9 조 대외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건설 부문에서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0조 대외경제위원회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11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

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 투자액이 하부구조건설 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노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구축물·작업장의 건설·재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투자 신청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합작기업·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 기업은 80일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에 대한 건강, 동식물의 생존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하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 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

제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 기관·기업소 대표와 외국투자가 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 운영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 3 장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며 그것을 저장·보관·가공·조립·분해·선별·포장·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존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소·단체도 국가의 승인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소·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대리점·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필에 임차 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 노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고급 기능공을 지대 노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지대의 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 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 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 가공은 지대 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

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 안에 들어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
2. 자유경제부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화·금융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유통화폐는 조선 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 원 또한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

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 원과 외화로 산 조선 원은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배당금·임대료·봉사료·재산판매 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 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

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율을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北 韓 의 산 릫 법

(1992. 12. 11. 제9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 채택)

제 1 장 산림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 이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 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 3 조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땃나무림으로 나눈다.

제 4 조 산림건설 총계획은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조성하고 보호, 관리하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림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국가는 산림건설 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산림조성을 전 균중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체인민이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조성전문 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림을 정하여 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한다.

제 6 조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 7 조 국가는 산림자원 이용질서를 바로 세우고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 8 조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 9 조 국가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산림경영 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제2장 산림 조성

제 10 조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당 축적을 늘일 수 있도록 산림조성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여야 한다. 중요지역의 산림조성 계획은 정무원이 비준한다.

제 11 조 국가는 산림조성을 적기에 균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한다. 식수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 12 조 국가계획기관은 나무심기, 심은 나무가꾸기 계획을 바고 세우고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

다.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심기를 정해진 기간안에 끝내며 심은 나무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나무심기설계는 산림설계기관과 해당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산림설계기관과 해당설계기관은 산림조성지역의 임산과 기후, 토양조건을 조사·분석하고 쓸모없는 산림을 개조하여 목재림, 섬유원료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딸나무림 같은 것을 늘일 수 있게 나무심기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종체계와 육종체계를 바로 세우며 나무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나무심기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무모생산을 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순위는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이 한다.

제 15 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산림조성에 쓸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는 원림조성에 쓸 수 없다.

제 16 조 나무심기는 나무심기설계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나무심기설계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 17 조 나무를 심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심은 나무가꾸기, 덧심기를 진행하여 살음율(*활착율)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 18 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제 3 장 산림 보호

제 19 조 산림을 잘 보호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 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 20 조 국가는 산불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불방지기간을 정한다.

산불방지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원이 한다.

제 21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으려고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산림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 22 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막이선을 치고 잘 관리하며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 끄기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단을 의무적으로 동원하며 산불을 제때에 꺼야 한다.

제 23 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는 산림병해충 예찰체계를 세우며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제 때에 없애야 한다.

해당기관의 허가없이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같은 것을 내갈 수 없다.

제 24 조 산림과학연구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 높은 농약과 생물학적 방법,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 것을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제 25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허가없이 산림구역에 도로, 건물, 시설물 같은 것을 건설할 수 없으며 산림구역에서 산을 일구거나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어 산림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6 조 국토관리기관, 임업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더기비, 사태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사방 야계공사(*개울공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 27 조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은 자연보호림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 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림구가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해당산림구역에서 짐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제 28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림구역에서 이로운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 그것을 적극 보호, 증식시켜야 한다.

제 4 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 29 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은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산림토지의 이용허가는 정무원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이 한다. 정무원과 해당 국토관리기관은 산림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 규모같은 것을 따져보고 이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순환식 채벌은 목재자원을 늘이고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도이다. 해당기관은 산림자원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 채벌 총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며 목재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 32 조 나무베기 허가는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과 임업기관은 국가로부터 나무베기 계획을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 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 연구, 딸나무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의 베기허가는 나무베기 계획이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33 조 나무베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나무베기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베기 허가증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 34 조 벤나무는 해당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서

만 실어갈 수 있다.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통나무는 나무반출증이 없어도 실어갈 수 있다.

제 35 조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기관이 허가를 받으며 정해진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제 36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이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 국가계획에 따라 벤나무같은 것을 해당용도를 맞게 이용하며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 국민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 37 조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 38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산짐승과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그 표본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하거나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산림경영에 대한 지도 통제

제 39 조 산림경영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한다. 정무원은 산림경영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전국의 산림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 40 조 국가는 산림경영사업을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전국적인 산림건설총계획은 정무원이 비준한다.

제 41 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그 이용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며 산림자원의 이용 사업을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산림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제 42 조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3 조 산림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기관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 44 조 산림경영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대를 베고 열대를 심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개간, 남·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자원 이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45 조 나무심기 계획과 심은나무가꾸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 나무의 살음율(*활착율)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이용을 중지시킨다.

제 46 조 허가없이 산을 일군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얻은 생산물, 비법행위에 이용된 도구와 수단을 몰수한다.

제 47 조 나무심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 나무의
 살음을(*활착율)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허가없이
 산림자원을 남벌·채취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 것과 같은
 산림조성보호 이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
 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
 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북한의 무역상사와 수출입품 현황

北韓의 무역상사는 무역정책의 실질적 수행자로서 외국상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수행하는 국영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北韓의 중앙집권적 통제경제하에서 무역상사들은 독립채산제원칙에 의거해 운영되면서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중앙예산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윤의 일부를 국가에 납입해야 하며 수출입 가격이 대내외 가격체제와 상이한데 따른 무역손익이 발행했을 때도 중앙예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이익금을 국가에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北韓의 무역상사는 중앙정부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으며 특히 대외무역의 주무부서인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무역상사들은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의 무역업무구분에 따라 무역부 관할상사와 대외경제사업부 관할상사로 나누어지는데 前者는 상품의 종목별로 분류된 전품목을 취급하며 後者는 주로 플랜트 등 설비류의 수출입, 기술교류, 기타 경제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北韓에는 약 1백 20개의 무역상사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와같은 수치는 통상 하나의 무역상사에서 해당상품을 전국적 범위에서 독점하는 시스템-「조선수산물수출입상사」에서 수산물을, 「조선광산수출입상사」에서 광산물을 전담해 수출입하는 형태-을 기본으로 삼아 왔으나

80년대 들어 경제 각 분야에서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고 대외무역을 강화함에 따라 특정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 등과 연계를 이루어 이들 생산기관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고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는 것을 전담하는 무역상사가 많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北韓당국이 외화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외화를 자체조달토록 함에 따라 경제관련부서는 물론 경제와 무관한 黨·政기관에서 조차 산하에 별도의 무역상사를 설립해 직접 대외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北韓의 무역상사가 증가된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 농수산물 및 광산물 등 1차산품이 수출품의 주종

비경제 부서 산하 무역상사로는 사회안전부 산하의 「동흥 무역상사」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회사에서는 신경통·기관지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전기침을 비롯한 의료기구 등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에 기반을 둔 무역상사와는 별도로 지방에도 독립채산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각 기관 및 생산단위 산하에 무역상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 무역상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는다. 지방무역상사로는 「송도원무역회사」(元山)·「송악산무역회사」(개성) 등 10여개가 있다.

北韓의 무역상사에서 취급하는 수출상품은 농수산물을 비롯해 무연탄 등의 비금속광물과 연·아연·금·마그네사이트

분말 등의 비철금속 같은 1차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상품의 다양화 노력에 따라 비록 수공업에 의한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공산품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한 80년대에 말부터는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을 통한 의류수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北韓은 지난해 초 대외무역 확대를 독려하는 「정무원결정」을 통해 가공무역을 강화하여 1차산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수출품의 품종 다양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北韓의 수입품은 석유·석유제품 등 광물성연료와 기계 및 수송장비가 대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北韓의 식량난을 반영하듯 식량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北韓은 지난해 말 이후 韓國의 무역상사들을 통해 잇달아 곡물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北韓의 식량수입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무역상사는 내용면에서 대체로 종합상사·수출전문상사·일반무역상사·특수무역상사 등으로 구별된다.

종합상사는 총회사 또는 총상사의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개의 지사와 해외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 「봉화무역총상사」·「대성무역상사」·「은하무역총회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 종합상사 등 1백20여개 무역상사 활동

봉화무역총상사는 산하에 7개의 무역상사와 약 20여개의 부문별 수출품공장을 갖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앙고라토끼 털·휘발성 植物油 등의 농축산물을 비롯해 접의자·탁자, 장난감, 양복겉이, 오바코트·원피스·체육복 등의 의류, 예술작품 및 공업예술품 등의 주종을 이룬다. 특히 이 회사는 조선화·깃털작품·목각공예 등의 예술작품과 함께 특별주문 형식으로 초상화를 제작해 수출하기도 한다.

대성무역상사는 산하에 10개의 무역상사를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수송회사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품 생산을 위해 개성인삼가공공장·사리원영예군인공장·평양모피수출가공공장·신덕샘물·해주수출가공공장 등의 생산시설을 산하에 두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자연 및 화학섬유로 만든 니트류(대성 제2무역상사), 모피·오리털 등으로 가공한 의류(제4), 수정·금속류·유리구슬 등으로 가공한 보석류(제5), 홍삼·개성인삼 및 그 가공품(제7) 등이며 수입품은, 각종 기계류 및 부속품(제6), 식량·가공어류(제3) 등이다. 이밖에 대성상업무역상사와 대성인흥무역상사에서는 호텔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품을 수입하며 대성운수회사는 일본·홍콩·싱가포르·태국·인도·파키스탄·그리스·서독 등지에 지사를 두고 대성무역상사의 무역업무에 필요한 화물의 용선 및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은하무역총회사는 지난 76년에 설립됐으며 산하에 1백10여개의 공장과 무역선을 거느리고 있다. 92년에만도 黃州모

직공장·開城모직공장 방직공장·興南수건공장 등의 공장을 새로 가동했다. 주로 외국상사와의 합영·합작생산을 통해 생산한 의류를 수출하며 의복재료와 섬유기계·부품 등 수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원료를 수입한다.

北韓 무역상사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무역상사는 개별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한된 상품을 수출하고 또한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와 원료를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장기계·공구류를 수출하고 이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재료를 수입하는 「조선공작기계무역상사」를 비롯해 낙원무역상사·유광무역상사·남흥무역상사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수출전문무역상사로 北韓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수출을 전담하는 능라도무역상사를 비롯해 농기계류의 설비 수출회사인 조선설비수출회사, 한약재 수출회사인 조선장수무역회사 등이 있다.

그리고 특수무역상사는 금융 및 보험기관·운수회사·관광회사 형태의 무역관련 회사를 일컫는데 봉화무역상사와 조선평양무역상사 등의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는 금강은행, 대성무역상사와 조선대외선박사업회사의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대성은행, 수출입화물의 보험 및 재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대외보험회사, 수출입화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대흥선박회사, 그리고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선국제여행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외통신 830호)

北韓日誌

北 韓 日 誌

- '92. 12. 11 ○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 폐막(平壤)
12. 12 ○ 南北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공동위 북측 위원장, T/S훈련 재개 결정 철회를 주장하는 「電通」을 남측위원장에 전달.
○ 「조선지식인대회」 폐막(12.9~12, 平壤).
12. 14 ○ 남북 핵통제공동위 제8차 위원 접촉진행(판문점).
○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5차 비정기사찰단 (단장 헤이키 싸우코넨), 平壤着.
12. 15 ○ 기자·언론인 쉼기모임 진행(平壤).
12. 16 ○ 北-루마니아 과학원간 「92~95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계획서」 조인(平壤).
○ 金日成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 出刊.
12. 17 ○ 南北 핵통제공동위 제13차회의 진행(판문점)
12. 19 ○ 「전국 法務일군대회」진행(12. 17~19, 平壤).
○ 국제원자력기구 제5차 비정기사찰단 訪北 종료(12. 14~19).
12. 21 ○ 알파 우마르 코나레 말리大統領 訪北종료(12. 19~21).
○ 로버트 스미스 美上院의원 訪北 종료(12. 19~21).
○ 崔宇鎭(核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孔魯明 남측위원장에게 「電通」: 핵통제공동위 14차회의

를 28일 개최할 것을 제의.

- 12. 22 ○ 金正淑출생 75주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平壤).
- 12. 23 ○ 崔宇鎭(核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孔魯明 남측위원장에 電通: 제14차 核통제공동위 회의의 28일 개최를 거듭제의.
- 12. 24 ○ 金正日 軍최고사령관 추대 1周 기념 「인민무력부 보고회」 진행.
- 12. 25 ○ 「전국農勤盟초급단체위원장대회」 진행(平壤).
○ 北韓-中國 체육주간 「93년도 체육교류계획서」 조인(平壤).
- 12. 26 ○ 사회주의헌법 채택 20주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平壤).
○ 北韓-방글라데시경제대표단간 「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平壤).
- 12. 28 ○ 中國 에너지部대표단(단장 副부장 유금이), 訪北 종료(12. 25~28).
○ 金日成, 平壤市 역포구역 동명왕릉 보수공사현장 「현지지도」.
- 12. 29 ○ 金正日, 피바다가극단의 민속무용組曲 「계절의 노래」공연 관람(평양대극장).
○ 崔宇鎭(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T/S훈련 재개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외신 기자회견 진행(平壤).
- 12. 30 ○ 박명철(前 체육위 제1부위원장)을 정무원 국가체육위원장에 임명.

- 尹伊桑관현악단의 「'92 송년음악회」 진행(平壤).
- 12. 31 ○ 노동당·중앙인민委·정무원연합회의 진행(금수산의사당); 金日成新年辭 발표.
- 「'93년 새해 설맞이 모임」 진행(平壤체육관).
- 金日成, 朝總聯에 조직육성비 1억2천3백80만 엔 送金.
- '93. 1. 1 ○ 北韓-체코, 北韓-슬로바키아공화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1. 2 ○ 金日成, 汎民聯해외본부의장 겸 在獨음악가 尹伊桑 면담.
- 1. 4 ○ 金日成신년사 관철 「平壤市군중대회」 진행.
- 1. 5 ○ 리비아 아랍사회주의 인민공동체대표단(단장 수산장관 무프타흐쿠하이바), 訪北(1. 2~5) 종료.
- 1. 6 ○ 金策工大 확장공사 完了: 延건평 15만6천㎡
- 1. 7 ○ 李根模(前총리), 咸北道黨責으로 권력 전면에 復歸
- 1. 8 ○ 平壤 청춘거리 속도빙상관 착공식 진행: 延건평 4만5천㎡
- 외교부대변인, 日本의 플루토늄 해상수송선 입장을 비난하는 「담화」 발표
- 1. 9 ○ 외교부대변인, 美-러시아간 2단계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II) 합의 관련 「기자회견」 진행: 한반도에서 非核化 및 軍縮실현을 촉구.
- 1. 11 ○ 北韓-카타르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崔宇鎭(核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孔魯明 남측위원장 앞으로 電通: 제14차 核통제공동위 회의를 1월 20일 개최할 것을 제의.
- 1. 12 ○ 金日成, 이란 이슬람교혁명근위대대표단(단장 혁명근위대 총사령관 모센 레자이) 면담.
- 1. 13 ○ 조선지식인대회 과업 관철을 위한 「과학연구 기관원들의 꺾기모임」 진행(사회과학원).
- 1. 14 ○ 「새날」紙 창간 65주 기념 중앙보고회 진행(平壤).
 - 金正日이 각지 청소년 과외교양기관에 보낸 「전자오락기구 전달식」진행(平壤학생소년궁전).
 - 崔宇鎭(핵통제공동위 북측위원장), 孔魯明 남측위원장에 「電通」: 남측의 3차례에 걸친 核통제공동위 위원접촉을 갖자는 제의를 거부.
- 1. 15 ○ 社勞靑 제8차대회의 성과적 맞이를 위한 「咸北道청년전위들의 충성의 맹세문전달 이어달리기 대열」출발모임 진행(咸北 會寧).
 - 駐루마니아 大使 문병록 更迭.
- 1. 17 ○ 몽골정부 무역대표단(단장 상업·공업성 차관 베 만달수렌), 平壤着.
- 1. 18 ○ 北韓-유엔개발계획(UNDP)간 「에너지 종합계획 대상에 관한 합의서」조인(平壤).
- 1. 19 ○ 駐예멘 신임大使에 주왕철, 駐방글라데시아 신임大使에 장원식 임명.
- 1. 20 ○ 「정춘실운동 전국상업부문일군 경험토론회」

진행(1. 19~20, 平壤).

1. 21 ○ 北韓-이집트간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행을 위한 93년~94년도 집행계획서」 조인(平壤).
1. 23 ○ 駐이란 신임大使에 최영로, 駐적도기네 신임大使에 염태를, 駐루마니아 신임大使에 金俞順 임명.
1. 25 ○ 南北 核통제공동위 「위원장」접촉 진행(판문점).
1. 26 ○ 汎民聯북측본부 중앙委 총회 진행(平壤): 의장에 白仁俊(문예총위원장) 선거.
1. 27 ○ 北韓외교부, 韓-美양국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실시 공동발표와 관련 「성명」 발표.
1. 28 ○ 祖平統, 駐韓美軍 核무기의 공개철거를 주장하는 「성명」 발표.
1. 29 ○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팀스피리트훈련재개와 관련 당국간 대화를 거부한다는 「성명」 발표.
1. 30 ○ 北韓외교부, 日本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책동을 비난한 「담화」 발표.
1. 31 ○ 김용섭(駐이집트 大使)를 駐모로코 신임大使로 겸임 발령.
2. 1 ○ 제3차 「2.16예술상 개인경연대회」개막식 진행(平壤음악무용대학).
 - 열친 러시아大統領 특사 게오르기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訪北종료(1. 29~2. 1).
2. 9 ○ 2·16기념 「영화상연순간」(2. 9~18)개막식

진행(平壤).

- 2. 10 ○ 「職盟일군·職盟員들의 결의모임」 진행(平壤 중앙노동자회관).
- 2. 11 ○ 기계공업부장에 광범기를, 건재공업부장직에 이동춘을 임명.
 - 2·16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인민문화궁전).
 - 해산-만포간 전철화공사(255.5km) 준공식 진행.
 - 金日成이 金正日에게 지어진 「頌詩碑」제막식 진행(백두산밀영).
- 2. 12 ○ 「제2회 백두산賞 국제피겨경기대회」 개막식 진행(평양).
- 2. 13 ○ 平山-開城간 철도전기화공사(80km) 준공식 진행(平山驛).
 - 駐오스트리아 신임大使에 金光燮 임명.
- 2. 14 ○ 黃長燁(黨비서)-영국 신공산당 총비서 에릭 트리베트간 「회담」진행(平壤).
 - 黨대표단(단장 黨비서 崔泰福)-터어키 노동당대표단(단장 위원장 로그 베린체크)간 「회담」 진행(平壤).
- 2. 15 ○ 「백두산賞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진행(平壤).

統一教育專門委員協議會 動靜

- 統一教育專門委員 新規委囑 與 解囑委員 名單

통일교육 전문위원 신규위촉 및 해촉위원 명단

구 분	신 규 위 촉	해 촉
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윤덕현, 조부금, 류형선, 서광휘, 김동식, 최상문, 이영훈, 김종수, 조정환, 김의식, 김천경, 임왕선, 이선홍, 장고명, 유금자, 윤계현	
부산직할시협의회	홍순태, 이송연, 김대수, 하영도, 허육호, 이광목	
대구직할시협의회	김병창, 박승일, 장봉철, 이진한, 이용희, 정철식, 이우동	허종호
인천직할시협의회		김창성, 최철극
광주직할시협의회	임용주, 손국치, 조상원, 정광섭, 안영자	
대전직할시협의회	이병배, 김선균, 최병춘, 김민지, 이순희	김석률, 양철승
경기도협의회	김종태	박상희, 오규홍, 윤장일
강원도협의회	이호락, 엄홍석, 박상귀, 탁주복, 최성규, 오순영, 오운옥	이석범
충청북도협의회	정백영	
충청남도협의회	윤광영, 박우인	
전라북도협의회	박태규, 김용식, 고정완, 이완길, 김종선, 이영규	
전라남도협의회		정민식
경상북도협의회	김경탁, 원영식, 김원식, 황영수	
경상남도협의회	김석엽, 정한섭, 김훈중, 박영수	
제주도협의회	황수성, 고상홍, 양철호, 김유현	

參考資料

- 國際關係의 轉換期的 葛藤과 統一環境 …… 崔文鉉

國際關係의 轉換期的 葛藤과 統一環境

(최문현 통일연수원장, '93. 2. 17~2. 18 서울 경찰청간부교육특강)

1. 冷戰終熄과 民族문제의 분출

현재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戰爭들, 소수 민족의 극단적 獨立운동, 宗教 및 人種분규등을 보면서 우리는 한때 「冷戰時代가 무너지면 곧 평화가 올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空虛한 생각이며 幻想이었던가 하고 反省하게 됩니다.

冷戰終熄이 가져온 과도기적 힘의 공백은 平화가 아니라 예기치 않은 많은 골치아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의 최근호(93.1.16)는 작년 한해 동안 지구상의 52개소에서 戰爭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약 50만명이 死亡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全世界 전쟁난민수를 3-4천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독일국방성 크라우스 나우만 총참모장은 소련 붕괴이후 약 70개의 소수민족이 독립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러시아의 社會學者 레오니드 이오닌 박사는 그보다 더 많은 125개 소수민족의 自治요구와 약 200개 지역의 소수민족 분쟁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라예보 發信 AP보도(93.2.4)에 의하면 지난 10개월 동안의 보스니아 內戰으로 18,000명이 죽고 약 100만명이 자기 고향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소련의

自治區였던 타지크共和國의 內戰에서는 약 8만명이 죽고 조선족을 포함하여 10만명이상이 이웃나라 파키스탄등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지금 宗教, 人種, 國境등 복잡한 문제로 流血事態에 휘말려 있는 곳은 「보스니아 헬체고비나」를 비롯하여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소마리아, 미얀마, 페루, 수단, 스리랑카, 인도, 앙고라,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타지크등 부지기수입니다. 이중에는 예컨대 트란스니스트리, 아브카시아, 체첸니아, 밍그레리아, 시스카이, 트란스카이, 크와크와(南阿共內少數民族)등 생전에 들어본 일도 없고 地圖上에 나타난 일이 없는 이름도 많습니다.

현재 약 8만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모두 13개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昨年末 美海兵隊가 上陸하기전 까지 소마리아에서는 武器를 쥔 사람은 식량을 확보하고 武器가 없는 사람은 굶어죽는 참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EC국가들의 무력개입 결의까지 보여주고 있는 “보스니아 헬체고비나”의 民族분규사태는 新유고 聯邦의 支援을 받는 세르비아系の 「人種청소」정책과 집단수용소의 가혹행위 때문에 전세계의 不安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보스니아 헬체고비나”사태에 대한 금후 서방국가의 대응이 “세계 여타지역의 분규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며 또한 “유엔과 EC 그리고 기타 주요 국제기구들의 향후 역할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될것”으로 인식하고 政策決定에서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영국 런던의 국방연구원장 마이클 크라크(Clarke)는 “보스니아 헬체고비나”사태에 대한 유엔과 EC의 심각한 고민을 다음과 같이 실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고사태에 개입하게 되면 한 세대이상 그 죽음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될 전쟁터에 우리 군인들을 몰아넣는 것이므로 歷史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우리가 유고사태에 介入하지 않으면 또한 歷史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극단주의자들까지 고무시켜 그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음이 없이 제멋대로 침략을 감행하고 세계지도를 바꾸도록 방관하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집단안보」와 「정글法則」중 어느것이 앞으로 국제사회를 지배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네바에서는 유엔을 대표한 벤스 전 미국국무장관과 EC를 대표한 영국의 오웬경이 보스니아 공화국을 인종별로 領土를 세분한 타협안을 놓고 오랫동안 세르비아族, 모스렘族, 크로아치아族 등과 協商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西方國家들을 포함하여 新유고연방, 터키, 이란, 알바니아, 그리스 등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전통적 영향력 때문에 協商妥結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10개 이상의 少數民族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발칸半島의 民族갈등은 14世紀 以後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 種族別로 땅을 細分한다고 해도 그들 상호간의 깊은 증오와 적대감이 잠재해 있는한 분쟁의 소지는 그대로 남이있게 되

는 것입니다.

민족! 그것은 “더불어 삶에 대한 동경”이라고 에르네스트 르낭(19세기 프랑스 作家)이 말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리 보잘것 없는 민족이라도 그들이 하나의 言語, 神話, 英雄을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는 民族 애고이즘이 역사속에 살아 숨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歷史學者는 「민족주의 애고이즘은 마지막 먹을것이 떨어져도 최소한 깃발주위에 모여들 수 있게하는 것」 「때로는 敗者의 이데올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낡은 지배체제가 쓰러진 곳에, 그리고 전통적 사회관계가 붕괴되어 걸잡을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 오는곳에, 그래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유일한것, 모든 懷疑를 초월하는 최고 價値」라고 했습니다.

아뭏든 지금 세계 여러곳에 분출되고 있는 民族분규를 보고 우리는 지난 100년간의 비통한 민족 수난사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韓末의 국권상실과 민족 유랑의 역사적 「퇴적물」을 아직도 알마타에서 사하린에서, L.A에서, 북해도와 오사카에서 천대받고 언젠가는 쫓겨날지 모를 우리 해외동포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내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고 동구와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은 공산주의 강압에 의해 없애였던 사슬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잃었던 하나의 民族共同體, 즉 “더불어 삶”을 되찾겠다는 恨풀이에서는 서로 비슷한 立

場이라고 하겠습니다.

2. 韓美安保協力の 새로운 方向摸索

국제환경이 연일 소란스러운 가운데 새해를 맞은 우리로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동북아정책이 어떻게 바뀔것인가에 모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냉전종식으로 미국은 이제 유일한 초강국이며 아직도 불안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전쟁 역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부시大統領이 물러나고 클린턴 大統領이 취임한 후에도 미국의 對韓政策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展望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일부에서는 동북아의 脫理念化와 한국의 安保環境 好轉으로 미국의 對韓政策 調整이 不可避하며 따라서 韓國의 새정부도 이에 대비한 政策代案研究가 必要하다는 見解도 나오고 있습니다.

民族統一研究院등 관련기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美國內에는 保守的 두뇌집단, 進步的 두뇌집단 그리고 국제주의자, 보호주의자등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 및 인사들의 각종 정책건의서가 클린턴행정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두뇌집단중 헤리티지 財團등 비교적 보수적인 연구기관의 立場을 종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冷戰의 마지막 대결구조와 군사력의 대치상황이 버티고 있는 한반도는 아직도 예측불허의 北韓의 存在, 분쟁을

막을 集團安保體制의 결여등으로 不安한 地域이다.

- ②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며,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중재역활과 군사력 주둔은 필요하다.
- ③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 미지상군 주둔, Team Spirit 군사연습 계속,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제 제공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해서)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④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적(regional role)이나 초지역적(Extra regional role)이냐에 따라서 作戰權, 防衛分擔 문제등에 대한 건설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학계 및 의회등 일부 진보적 두뇌집단과 인사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오늘의 국제사회는 냉전질서의 퇴장으로 비군사적 질서, 특히 경제가 지배하는 질서로 바뀌었다.
- ② 지금은 보편적으로 권위주의가 쇠퇴하고 다원화, 민주화시대를 열어 놓으므로써 “法の支配”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의 平和維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③ 安保와 防衛는 多者協力, 集團安保概念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힘의 공백은 願치 않으나 미국의 役割과 負擔은 구조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 ④ 남북한의 유엔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발효등 제반여건 변화로 한미관계는 재조정되

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일방적 대미의존, 주한미군의 존재 등은 쌍방에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의 양측 견해는 물론 미국 행정부의 정책구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 정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일반적 여론의 평균치, 특히 보수파와 진보파의 시각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의 백악관 정보자문위원회 위원장 크로우(Crowe)제독은 최근 「미국의 외교정책과 남북한의 장래」라는 주제로 한반도문제 연구보고서를 미국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크로우제독의 연구보고서는 스카라피노교수, 홀부르크 전 국무차관보 등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국무성, 국방성,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하원 외교위 전문가들이 참석한 원탁회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 》

-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속에 統一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전략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미국의 지상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촉진시켜야 하며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 갑작스러운 통일의 충격은 남한의 취약한 민주정치에 참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장기적인 안정에서 오는 이익이 핵사찰이나 미사일 판매금지와 같은 단기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서방세계의 강경노선은 수정되어야 한다.
-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함에 있어 먼저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대남 폭력적화노선의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속도, 변화성격에 대한 미국과 다른나라의 영향력에는 限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핵 문 제 》

- 北韓의 核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核사찰이 지연될수록 북한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할 기회를 갖게 된다.
- 한국과 미국이 현재 북한에 내놓고 있는 제안과 조건들은 신축성 있게 재고되어야 한다. 즉 강제사찰 원칙을 고수하되, 그것을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해서 보다는 국제사찰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북한은 IAEA의 국제사찰에는 호응하면서도 남북상호사찰에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 주한미군의 장래 ▶

- 1954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 공약의 상징으로서 최소한 일부 미군의 한국주둔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兵力數와 구성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미군감축은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철수를 무리하게 서두르면 군사적 역지력은 물론이고 미국의 영향력과 시장까지 잃을 수도 있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군축등 남북한의 군비통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 아시아의 한국주둔 미군의 비용 및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야한다. 주한미군의 직접비용은 9억불인데 한국 측은 1995년까지 이중에서 1/3을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크로우 제독은 이상과 같은 정세판단에 기초하여 「한미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 「핵문제 해결후 미·북한 고위급 대화추진」, 「亞太地域의 多者間安保協力推進」등 12個項의 政策建議을 클린턴 행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특히 주목되는 것은 亞太地域의 多者間 安保協力 문제입니다.

1993년에는 東北亞의 세력균형 변화, 日本, 中國의 군비증강 추세등의 새로운 역학관계로 주변국가들 사이에 多者間 地域安保協力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즉 미국은 이라크, 보스니아, 소마리아등에서 보듯이 대외정책 기조를 봉쇄정책에서 集團介入政策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日本은 캄보디아의 PKO참여에서 보듯이 대외적으로 정치·군사적 영향

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新思考 外交」에 입각, 지역 집단안보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인접한 구소련지역 소수민족 분류, 일본의 군사력 팽창과 미국의 영향력 감소등이 東北亞 不安要因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이지역의 多者間 안보협력체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南北韓의 대치상황, 北方 4개섬 문제로 인한 日, 러간의 불신, 人權 문제로 인한 美·中간의 不和등 이 지역의 특수상황으로 말미암아 유럽安保協力會議(CSCE)와 같은 多者間 安保協力구도가 形成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간의 쌍무적 안보협력체제에만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구도가 다른 형태의 집단안보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북한의 外憂內患과 남북관계의 停滯

한때 국내외의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공산주의 종언, 소련 붕괴, 한중수교등으로 이어지는 바깥세계의 거센물결이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여 결국 몇년안에 북은 무너지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이념, 외교,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해방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은 사상학습, 사회통제와 같은

사상유례가 없는, 그들 특유의 통치메카니즘으로 외관상 체제응집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 내부의 최근 움직임에 관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무려 356회의 정치집회가 개최되었고 「一心團結」, 「우리식 사회주의 固守」, 「당과 수령에 忠誠을」등을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정치집회의 내용을 보면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된 것이 54회, 김정일 우상화와 관계된 것이 102회로서 전체행사의 4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정권수립후 처음으로 과학, 교육, 예술, 문화, 언론등 각분야의 간부들 약 5,000명을 참가시킨 「조선지식인 대회」를 개최하고 인테리 계층에 대한 사상개조 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발표된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이라는 연설문과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은 오늘의 북한 지도층과 사회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공산주의가 붕괴된 직후 노동당 간부들의 교육용으로 발표된 이상의 연설과 논문은 실제로는 김정일의 통치기반과 우상화 작업을 더욱 다지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몇개의 특색있는 귀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 공산당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로 되돌아 간 것은 인류역사의 전반적 흐름

에 비추어 볼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 맑스주의는 인민대중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였으나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옳은 대답을 줄 수 없었다.
-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반 사회주의적 책동을 파탄시키고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과 인민정권의 강화, 사회주의 원칙과 순결성 고수, 영도승계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필수적 과제이다.
- 우리 당을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전투적 대오로 발전시키자. 우리 인민은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여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결심을 하자.
- 社會主義 사회에서는 이른바 多元主義가 許容될 수 없다 사상에서의 自由, 政治에서의 多黨制, 所有에서의 다양화를 허용하는 것은 社會主義와 인민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상의 인용귀절에서 엿볼수 있듯이 북한 지도층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사실과 맑스주의사상의 非科學性 등을 인민들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당과 정권의 약화, 사회주의 원칙과 순결성의 동요, 영도승계문제의 불확실성, 인민들의 좌절등 근본문제에 대한 불안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지도층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교훈삼아 그들 체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북한도 결국은 「중국모델」의 사회주의 제도, 즉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고수하되 경제적으로는 일부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전환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그의 연설과 논문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원칙과 순결성고수”를 강조하고 있는것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김정일은 북한주민과 당간부들에게 思想에서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정치에서의 多黨制를 허용할 수 없다! 所有에서의 多樣化를 허용할 수 없다!고 호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多元主義를 허용하는 것은 당을 배반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반혁명적 책동”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체제수호를 위하여 사상학습과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학습과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不安心理를 노출시키는 것이며 그 목적은 감시, 일탈방지, 회유와 경고등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오늘날 북한사회의 구석구석을 무겁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초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이 평양을 다녀와서 그가 北韓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볼수 없었다고 실토한데에서도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

니다.

前 東獨의 유명한 精神科醫師인 한스 요아킴 마아즈박사(Hans Joachim Maas)는 「共産黨 統治 메카니즘은 本質적으로 인민들에 대한 선전 선동을 통해 은밀히 겁주기(Einschuchterung), 강제로 길들이기(Anpassung) 생각 뜯어고치기(Verformung)등의 방법으로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自律, 個性, 中立 같은것은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非人道的이며 反文明的인 統治方式은 人民들의 물질생활이 꺾박해지고 사회기강이 문란해질수록 가혹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지도층과 인민들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대내 문제는 경제침체입니다. 북한 경제사정을 대략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자료를 몇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 북한은 1987-1993 제 3차 7개년계획 기간중 年平均 成長目標를 7.8%로 설정하였으나 90년에는 -3.7%, 91년에는 -5.2% 그리고 지난해에도 -5% 안밖의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1990년의 식량생산은 前年度의 -12%를 기록하여 91년에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130만톤의 밀, 옥수수 등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량배급은 법적으로 1인당 하루 700g으로 되어있으나 1992년 실제배급은 350g 정도로 감소되었다는 일부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한 북한문제 전문가(국제경제·정치연구소 아

세아 연구센터소장)의 보고에 의하면 1990년 러시아는 북한에 原油 50만톤을 수출하였으나 1991년에는 4만 2천톤, 1992년에는 2만 5천톤으로 줄었다고 합니다.(年間必要原油 350만톤, 91년도입은 180만톤)

- 그리고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8년의 총규모 52억불에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즉 1989년은 48억불, 1990년은 46억불, 1991년에는 27억불로 격감되었습니다.(91년 수출 10억불, 수입 17억불)

이로 인해 북한의 외화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1991년 현재 92.8억불에 이르는 외국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금 핵개발 의혹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사면초가의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北韓의 핵개발 문제는 단순히 남북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의혹과 불안을 갖는 것은 그들의 ①핵무기개발의지 ②핵물질 생산능력 ③핵시설의 안전도 ④핵정보의 불투명성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南北상호사찰과 IAEA국제사찰의 상호보완으로 북한 핵개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한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92.2.19.발효)에 따라서 聖域없는 사찰을 실시하자는 우리측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IAEA에 의한 국제

사찰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IAEA는 6차에 걸쳐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2개의 未申告된 시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추가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IAEA는 북한측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여 제재조치와 강제사찰을 추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2월 8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같은 IAEA의 강제사찰 움직임에 대해 「우리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국제사찰을 이용하려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대남방송에서 북한당국은 미국이 있지도 않은 핵의혹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제 2의 이라크사태로 몰고가려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 맺 는 말

우리 민족의 世紀的 염원은 近世 백년간 지속된 “갈등의 中心地” 한반도를 “平和의 中心地” 한반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바로 평화의 中心地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온겨레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해 한민족 통일운동사에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을 채택·발효시킨 남북총리 회담은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에는 成果를 올렸으나

합의사항의 실천문제에서 정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큰소리만 하고 실천이 없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를 지켜보았고 그들과의 會談은 역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동구 공산주의 몰락후 독일식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북한 통치자들로서는 지금 남북관계 발전에 관심을 돌리기에는 대내문제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북교류와 “制度統一”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立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일은 남북교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제도통일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들이 남북교류와 제도통일을 반대한다면 사실 회담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통치자들과의 답답하고 지루한 會談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효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역사와 민족에게 범한 과오를 솔직히 지적해주고 무엇이 올바른 통일의 길인가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것, 그들의 오판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회담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이용되는 것은 성립 될 수 없다는 것, 선전과 기만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쌍방의 언행이 역사에 기록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화 이외에 더좋은 代案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조용히 북한 통치자들과 북한 동포들의 변화를 기다

리는 여유를 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에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준비도 실속있게 다져 나가야 합니다.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89년 백림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남북예멘이 1972년 통일헌법 제정을 약속하고 1990년 통일을 이룰때까지, 이 두나라는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관계발전도 있었지만 동시에 갈등과 적대행위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겨우 북한과 회담다운 회담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통일환경이 급격히 호전되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이 지난날 독일, 예멘의 경우에 비해서 훨씬 단축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民族統一史의 한페이지 한페이지에 우리가 한일을 기록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 時事資料 —

統一教育('93-1)

1993年 2月 日 印刷

1993年 2月 日 發行

統 一 研 修 院

(電話 901-7173)

印 刷 江 聞 印 刷 社

(전화 294-6651~3)
